

노동행복 연결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협동조합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좌담회 :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슈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특별기고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마음
이
기쁘다

생협평론 2013 봄 (10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쌈)
펴낸날	2013년 3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 화	02) 2060-1373/4
구 독	1권 3,000원 / 1년 10,000원
e-book	교보문고, 리디북스, 알라딘, yes24에서 무료 구독 가능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3 봄 (10호)

길잡이

왜 협동조합 생태계인가?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7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20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 ((주)아이쿱축산 상무대행)	35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52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 (아이쿱생협 콕서비스 경영이사)	68
좌담회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80

이슈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물려온다	박기용 (한겨레 사회부)	98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106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1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2
-----------------	-----------	-----

돌발논문

물의 공공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3
------------------------	----------------------	-----

서평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최은미 (밝맑 도서관)	133
-------------------------	--------------	-----

협동조합소식

세계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8
----------------------------------	----------------------------	-----

특별기고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 추진위 집행위원장)	141
----------------------	-------------------------------	-----

왜 협동조합 생태계인가?

염찬희 (편집위원장)

눈을 감고 상상해본다.

“아침에 지난 주 인터넷으로 주문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급자가 넉넉한 웃음과 함께 집에 들여놓아 주면, 그 중 몇 가지를 골라 저녁에 먹을 반찬들을 맛깔스레 만들어놓고, 어제부터 쭉시기 시작한 관절을 치료받으러 의료협동조합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버스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녀오던 중에, 친구 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한다. 슬픔에 잠긴 친구를 위로하고 자리에 앉으니 장례협동조합에서 나온 분들이 음식을 가져다준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택협동조합에 들러 내가 사는 집을 보수하는 문제를 상의한다. 나와 내 가족의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입하고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합은 예닐곱 개가 된다. 이전에 일상의 생활을 투자자 중심 주식회사에 맡기고 과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은근히 저열한 서비스를 받던 때와 비교해보게 된다. 우선 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지역사회는 나 외의 다른 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애쓰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행복하다.”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생태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언제부턴가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용어가 협동조합과 관련한 담론 지형에서 드물지만 나타났다. 그 쓰임도 비교적 추상적인 대안의 한 형태 정도에 머물렀다. 협동조합을 생태계적으로 접근한 이 용어는 현재까지는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협평론> 10호는 특집으로 ‘협동조합 생태계’를 기획했다.

한국사회 전체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협동조합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의

끝에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인의 시대적 과제로 협동조합 생태계를 제안하고자 했다. 추상의 수준에서 그 필요성을 논하는 것에서 나아가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합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즉, 조합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 까지 보여줄 수 있는 필자를 수소문했다.

협동조합연구소의 김기태 소장은 한국의 경제적 위기에서 협동조합 생태계가 왜 하나의 대안인지 설명해주는 총론적이면서 깊이 있는 글을 보내주셨고, 신성식 아이쿱생산경영대표는 한국생협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자기 과제로 삼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푼 힘 있는 글을 주셨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권미옥 활동국장은 생협의 조합원 활동 측면에서 협동조합생태계 조성이 조합원에게 주는 이익을 조목조목 짚는 꼼꼼하고도 깔끔한 글을, 김홍범 (주)아이쿱축산 상무대행은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꿈꾼다면 협동조합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읽히는 명쾌한 문장에 녹여주셨다. 마지막으로 오항식 아이쿱생협서비스 경영이사가 몬드라곤, 덴마크,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재고한 좋은 글을 주셨다. 이 다섯 편의 논문은 공히 조합원 서비스에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매번 편집할 때마다 협동조합 관련한 글을 부탁드릴 필자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여기에 더해 새로운 주제를 던져서 고민하도록 필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편집진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그렇지만 설령 괴롭다 해도 피해서는 안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집진에게 이번 호에도 다섯 꼭지의 귀한 특집 논문이 도착했다.

특집을 읽어내려 가려면 필요한 기초 지식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란 “어느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군과 그 협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한 복합체계”라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국어사전의 생태계 설명을 준용해서 신성식이 그의 글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에서 정의한 것이다.) 

협동조합 생태계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좌담회 :

-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1. 들어가며

2009년 이후 양극화 심화에 따른 우려와 내수경제 침체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또한 수출 중심 대기업의 육성을 통한 한국경제의 동반상승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할 수 없다는 합의도 국민적으로 이뤄져 가고 있다. 한 편론은 이를 대체하는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속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협동조합 선진사례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협동조합복합체나, 다양한 이종 협동조합 간 연합회 구성을 부러워했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우리 조건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특히 협동조합진영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협동조합생태계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가 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으므로, 협동조합운동진영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하며, 좋은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은 협동조합운동진영이 앞으로 10여 년 이상 추구해 나가야 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운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2. 대안과 생태계의 이해

1) 사회경제적 대안의 조건

협동조합 생태계를 논의할 때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편익을 주는 협동조합’ 정도의 인식으로는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주류 사회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 없이는 협동조합 논의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기존 주류 사회경제를 보완하는 하위 범주로서 기능적인 논의에 멈추고 말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석달째 되어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월말 기준으로 3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협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협동조합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함께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대안이다, 아니다”라는 언론기사들도 나오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비해 볼 때 협동조합기본법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둘러싼 논의가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면 쏟아붓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거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운동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논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대안이나 아니냐의 논의에서 ‘대안(alternative)’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논란으로만 끝날 수 있다.

대안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간단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떤 안(案)을 대신하는 안”으로 설명되고 있다. 백과사전들에는 표제어는 없고 ‘대안 의학’,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 등 어떤 주류에 대신하는 여러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다. 논의의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 ‘대안’이 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대안이란 일반적인 대중이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안이란 말이 의학과 음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대안의 결과물을 대중이 직접 몸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대안’적 경제로서 협동조합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의 이론적 추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주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대중의 실천 속에서 사회경제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낼 동력을 얻을 수 있어야 대안 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선택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점유율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기존 주류경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의 총사업량(혹은 부가가치액) 중에서 다른 주체들의 일부를 대체하여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이 때 대안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그것이 ‘재벌’인가, ‘영리적 대기업’인가, ‘자본주의 경제’인가, ‘시장 전체’인가에 따라 의미 있는 점유율의 목표와 계산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엄격한 논자들은 협동조합이 대안이나 아니냐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본주의적 경제’를 협동조합이 절반 이상 대체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 같은데, 이는 합의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또한 의미 있는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합의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논의할 경우에는 정치혁명을 통한 강제적 대체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류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대중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제도로 주어지는 상황은, 자립과 자기책임이라는 협동조합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대안운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주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주류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이 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익숙해진

다는 이야기이다. 의미 있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망하고 노력하지 않는 대안이란 단절된 폐쇄적 공동체에서 아큐의 ‘정신승리법’¹을 즐기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명실상부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협동조합의 운영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문제설정을 넘어서서 거시적 차원까지 협동조합을 통한 더 나은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1세기 사회경제체제는 이미 국가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의 제도화를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세계적 차원의 제도적 설계는 생활인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제도가 운영되는 순간 환율이나 이자율, 유가나 곡물가의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일상적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변동은 협동조합이나 자립 경제를 지향하는 폐쇄적인 작은 공동체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생활의 영역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국가, 초국가적 경제제도까지를 포괄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티브를 제시하지 않고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 논의는 이런 초거시적 제도를 협동조합 논의의 문제설정 영역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류가 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과 그에 따르는 협동조합들의 폭넓은 분화를 인정하되, 그것을 협동조합이란 틀로 통합적이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는 진화하면서 복잡해진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2) 생태계의 특징과 협동조합에 대한 적용

협동조합 생태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계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태학이나 생태경제학에 따르면 생태계는 시스템, 특히 복

¹ 루쉰은 소설 『阿Q정전』에서 주인공 아큐(阿Q)의 성격을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에 이겨내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만족감으로 도망가곤 하는 심리’를 가졌다고 묘사했는데, 이것을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라고 한다.(편집자 주)

잡계(Complex System)다. 복잡계는 단순하거나 그냥 혼잡한 요소들의 무더기와 달리 자기 조직화하는 진화 능력이 있는데, 이런 진화능력은 복잡계가 확보해야 할 몇 가지 특징에서 연유한다.

첫째, 복잡계는 다양한 구성인자들이 여러 수준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계적 구조(hierarchy)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수준의 하위 시스템도 또한 복잡계의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생태계는, ‘사람들’이라는 복잡계가 모여 만든 ‘개별 협동조합’이라는 복잡계가 또 모여서 만든 생태계이며, 동시에 사회경제계의 하위 복잡계이다.

둘째, 복잡계는 하위 구성요소들의 연계관계로 인해 하위 구성요소로 환원 할 수 없는 새로운 행동이나 패턴, 즉, 창발성(emergent property)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등은 단순한 물질이지만 이들의 연계관계를 통해 물질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이란 새로운 특징이 만들어진다. 협동조합도 단순히 좋은 조합원들만 모이면 좋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개별 협동조합이란 시스템을 잘 설계하지 못하면 좋은 조합원들만 모아도 나쁜 협동조합이 나올 수 있다.

셋째, 복잡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는 비선형적(non-linearity)이면서 동시에 되먹임 구조(feedback loops)를 가지고 있다. 창발성에 의해 각각의 요소들은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비선형적이며, 동시에 요소들은 상호간의 연계 관계 속에서 어떤 활동의 결과가 다시 활동의 원인을 제공한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은 의도적인 창발성과 시너지효과를 내는 되먹임 구조를 만들려는 협동조합운동의 원칙이다. 연합회 혹은 2차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활동은 협동조합생태계 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복잡계는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우며(ambiguous boundary), 경계를 의식적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경계의 바깥에 대해 열역학적으로 열려있다.(open systems) 열역학적으로 열려있다는 말은 하나의 복잡계는 그 자체적으로 완전히 폐쇄적일 수 없고, 에너지와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며 엔트로피(entropy)를 높이는 특징을 가진다. 즉, 복잡계는 기본적으로 정

태적인 평형상태(equilibrium)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 갈 수밖에 없다.

만약 협동조합 생태계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말하면 내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고 약속한 것처럼 생태계의 변화와 적응을 포기하고 기존의 도그마를 강요하는 순간, 협동조합 생태계는 생태계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고 해체되어 갈 것이다. 협동조합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차원의 지속적인 ‘혁신’은 필수적이다.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인 열린 마음(openness)은 생태계로서의 협동조합 논의와 정확히 부합한다.

다섯째, 이상의 특징들을 조합하면 특정한 복잡계는 각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복잡계의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나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특정한 복잡계의 역사 속에서 변형된다. 즉, 강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열려있다. 카오스 이론의 ‘나비효과’처럼 작은 제도적 수정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어떤 상황을 변화시켰는데 전혀 영향이 없거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오코너(O'Connor)는 이런 특성을 근원적 불확실성(fundamental uncertainty)이라고 했는데, 이를 감안하여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겸손함의 미덕을 가지고,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생태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는 생명체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복잡계이다. 생태계는 “어떤 지역 안에 사는 생물군과, 이것들을 제어하는 무기적 환경요인이 종합된 복합 체계”이다.(두산백과) 이런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조직적인 위계를 가지게 되는데, 생물체의 경우에는 개체-종-군집-생태계의 위계를 가진다. 한편 인간은 개인-계급계층-커뮤니티-국가-국제사회로 구성되는 각기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개별요소와 조직 및 제도들이 서로 위계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한 채 진화하는 사회경제계를 생태계의 일부로 구축하고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사회경제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조합원-개별협동조합-연합회-상위연합회-국제연대조직으로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3. 협동조합 생태계의 문제설정 범위와 정당성

1) 협동조합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

현재 한국 사회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협동조합 생태계를 논의할 때 생태계가 가지는 복잡계로서의 특징을 잘 감안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없던 때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탄생과 진화라는 생태계 논의의 기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상향식으로 건설되는 연합회라는 법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위계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 생태계가 생태계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진화해야 한다. 생물학적 생태계와는 달리 사회경제계와 협동조합 생태계는 기본 구성요소인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생태계는 특히 사회경제계의 하위체계이면서도 사회경제계 전체를 개선하고 진화시키는 데 의미 있는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태계는 열린 구조이므로 환경을 배경으로 하지만 구성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인 ‘생산’과 ‘재생산’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생태계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자기완결적인 재생산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협동조합 생태계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핵심 구성요소와 그 역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협동조합 생태계를 사고할 때 필수적인 구성요소들 설정에 사람과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유기체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기가 필요하다. 우선 구성요소들의 활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과 심장이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영양분으로 전

환하는 위장 등 소화기관이 있어야 하고, 생각을 하며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계와 뇌가 있어야 한다. 심장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경제계 내부에서는 ‘신용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은행’이다. 소화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각종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이다. 특히 소비협동조합은 생산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해결하는 가장 우호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곳으로 협동조합생태계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전체 신체를 조절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기능을 수행할 ‘연합회’와 ‘연구협동조합(연구개발 및 컨설팅 담당)’등이 필요하다.

이런 협동조합이나 연합회들의 역할은 협동조합 간 가치사슬의 결합력을 높여 개별 협동조합들의 성공률을 높이며, 좋은 협동조합들을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볼로냐나 퀘벡, 몬드라곤 등 성공적인 협동조합을 보면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개별 협동조합들의 역량을 단순하게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기능을 창조하는 창발성을 발휘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성할 때에도 이런 중요한 협동조합들의 협력체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협동조합 생태계 운영의 정당성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논의는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를 전제하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생태학에서도 하위 생태계로서 ‘사막생태계’나 ‘극지생태계’ 같은 극한 상황의 생태계를 연구하기는 하지만,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생태계를 논의할 때에는 당연히 협동조합이 기존의 사회경제계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을 협동조합에 더 적합하게 조성하고, 협동조합들 간의 협력체계를 개선하여 좋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라는 ‘목적의식적’ 생태계 조성을 추구한다.

기존 사회경제계에 대해 협동조합 생태계를 별도로 조성해 나가는 것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 생태경제학의 핵심 열쇠 말인 ‘엔트로피의 증가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의 구성’과 ‘공진화(co-evolution)’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공진화는 생태계와 사회경제계는 상호영향을 주면서 발전했다는 개념에 적용된다. 엔트로피 개념은 오늘날 사회경제계가 비대해 지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므로, 공진화가 깨지는 구조를 막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생태경제학의 논의로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계-사회경제계-협동조합 생태계의 3가지 생태계의 관계설정을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의 정당성을 정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 생태계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협동조합들이, 사회경제계 내부에서 영향력을 높여 더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경제계의 건강한 발전이 협동조합 생태계에 좋은 환경으로 피드백되어 다시 생태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진화가 필요하다. 이미 협동조합 경제학에서 정리된 ‘시장척도기능’은 독점기업의 독점이윤 추구가 가져다주는 다른 경제주체에 대한 착취와 이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소비협동조합을 통한 생태친화적인 조합원들의 생산적 소비활동들은 생태계와 사회경제계의 가교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사회경제 주체들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 생협이나 우리나라 생협이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이나 윤리적 소비를 전면화 시킨 것은 이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구성에 협동조합이 기여해 왔으며, 협동조합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런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협동조합의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금융자본주의 중심의 제도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협동조합 생태계의 역할을 제시해 주고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가 발전할 때 각각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지속되므로, 사회경제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일원화되어 흡수되고 쇠퇴하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도 협동조합 생태계는 사회경제계와

공진화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은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생태계와 사회경제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논의는 당연히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가 가지는 양극화, 지역불균형 발전, 재벌 위주 경제제도, 좋은 일자리의 감소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 협동조합이 직면한 복수의 제도적 층위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할 때 사회경제계는 하나의 환경으로 작동하며, 마찬가지로 정치적 제도 등도 환경으로 작동한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부 각각의 구성요소의 연결과 피드백도 잘 설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환경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협동조합 생태계의 발전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위계구조와 연결되는 사회경제적 제도도 복수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합원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교육이나 보육,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사회경제 제도에서 협동조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협동조합 문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친숙함과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경쟁과 함께 협동을 가르치고, 여러 사업체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의 원리와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제도의 개선은 협동조합문화 확산과 홍보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된다.

둘째, 개별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들의 개선이다. 인허가 제도나 정책 지원 대상에서 협동조합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다른 기업 운영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제도나 거래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과 자체적인 정화작용을 통해 권위 있는 연합회의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 혹은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흑자도산기업의 노동자 인수나 기금의 조성, 단기

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 협동조합 운영의 특징을 감안한 금융시스템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현재 세계화된 상황에서 금융자본은 국가정책을 제한하고, 한 국가의 경제를 교란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적합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부채계정으로 설정함으로써 협동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국제적 연대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현 단계 협동조합 이슈와 생태계적 접근의 관점

1) 협동조합 다양성의 인정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개체들의 분화와 그들 간의 경쟁과 협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동일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하나의 원칙과 발전 방향만을 고집하는 것은 협동조합 생태계 논의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원칙의 해설에서도 “원칙은 도그마가 아니라 새로운 조건 속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각자가 설계하는 개체 혹은 연합회로서 열린 구조를 가지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통해 권위 있고 포괄적이면서 풍부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리해 나가야 하며, 이 속에서 협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새로운 협동조합의 생태계적 활성화 방안

기본법 발효 이후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문화가 일천한 상황에서 피상적이거나 일면적인 이해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도 많이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설립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기존의 사회경제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려는 대

중의 열망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려는 주체들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의, 좋은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협동조합 교육이나 세미나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때 생활협동조합의 전, 현직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나 인큐베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진영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3) 농수협 등과의 협력 방안

농협과 수협 등 기존 개별법에 기반한 협동조합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여 전체적인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기존의 개별법 협동조합은 그동안 축적된 인적, 물적, 경험과 구체적 제도 정립과 관련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개별법 차원의 중앙회 중심으로 연합 활동에 익숙해 있으므로, 전체 협동조합의 연대와 생태계 조성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는 여러 구성 요소들의 재조직화를 통해 연관성을 강화할 때 진화와 동력이 강화될 것이다. 협동조합 생태계 논의에서 기존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정비를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은 많다. 가치사슬의 정비와 사회경제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공통법으로 강화, 발전시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법제도 개선 권고를 완성하는 과제, 국제연대활동의 효율화와 활성화, 각급 층위의 제도적 정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생산협동조합인 완주 고산농협과 소비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의 협력이나, 안성 고산농협과 가톨릭 우리농본부와의 협력 등, 기존 농협과 생협 계열의 협력 모범사례가 있다.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준비모임에 서울신협협의회가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좋은 사례다. 이런 활동과 연대를 전면화 시켜내는 것도 협동조합 생태계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할 일이다.

5. 마무리하며

협동조합 생태계 논의는 이제 시작이며, 아직 해명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운동가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개별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일과 동등하게, 한국 사회경제계의 대안으로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매길 때 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전체 협동조합진영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언제나 작은 연결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경제의 명실상부한 대안을 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큰 소명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쉬지 말고 노력하자. [icoop](#)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2012년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대의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이 제 2의 새마을운동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소망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과연 협동조합이 이런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유럽의 협동조합은 그 진가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협동조합이 주는 실효성은 너무 미약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의 협동조합이 시민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실효성이 적은 주된 이유가 협동조합 생태계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협동조합 생태계란 어떤 것인지, 이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인식과 활동이 필요한지 그 구상을 밝히고자 한다.

1. 협동조합 생태계란?

생태계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어느 환경 안에서 생육하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면 협동조합 생태계란 ‘어느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군(群)과 그 협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한 복합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군이란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사업자와 같은 다양한 집단과, 생산, 유통, 소비, 신용, 금융 등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을 일컫는다. 복합체 내부는 협력적이며 때로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협동조합 군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 생산자 군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

고, 그나마 협동조합의 생명인 조합원의 자율과 책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생협인데, 이마저도 충분히 발전했다고 할 수 없다. 자연 생태계에 비유하자면 생물이 한 종류만 살아가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소비자생협 혼자서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생산 없는 소비는 없으며 노동 없는 생산과 소비도 없다. 또한 모든 사업에는 금융이라는 피가 필요하다. 산불이 난 자리는 아무 것도 남지 않고 파괴된다. 하지만 나무를 심고 풀을 가꾸는 노력이 쌓이면서 숲이 복원되어 간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생협만 있는 민동산을 어떻게 숲으로 가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은 불안정한 민동산과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협동조합을 생태계 구성을 통해 숲으로 복원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는 어떤 숲을 가꿀 것인지 정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필요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그리 어려운 개념과 정의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사회의 특성과 결합하여 협동조합을 운동 조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녹색평론』 최근호에 실린 박승옥의 글을 보면 분명해진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결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결사체이자 사업체이다. ……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연대와 연합, 협동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는 대안의 경제운동조직인 동시에 대안의 사회운동조직이다. …… 나아가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의 운동이다”¹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박승옥, “한국생협, 성장신화를 버려라”, 『녹색평론』 2013년 1,2월호, 50~51쪽.

결사체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같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따라서 결사체는 항일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부터 새마을지도자회까지 다양하다. 협동조합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필요와 바람이 아닌가? 한마디로 공동 목적인 것이다. 사업체는 그 결사(목적)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협동조합과 대비되는 주식회사에서 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윤 추구라는 공통의 목적이 대부분이다. 굳이 결사와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왜 협동조합은 결사체로서의 성격이 중요한가? 이는 사업(체)이라는 또 하나의 속성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결사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면 구르는 돌과 같이 강한 관성(慣性)이 작용한다. 관성의 법칙은 결사의 방향을 잃게 만들거나 때로는 잊게 만든다. 아무리 힘이 좋은 천리마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달리게 하기 위해 고삐를 채워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 사업체라는 말에 고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결사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서 결사의 목적은 ‘일자리’다. 1957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난로 공장을 인수하면서 몬드라곤이 시작되었다. 스페인은 1970년대 초까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다. 몬드라곤이 속해있는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²을 지향하는 기운이 강하게 지배하는 곳이다. 2004년 3월 수도인 마드리드 통근열차 폭파사건³의 배후로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가 지목될 정도였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이 지속되는 바스크 지역에서 일자리는 큰 담론이 아니었다. 몬드라곤은 일자리라는 소소한 결사를 유지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2 1930년대에 바스크 분리주의 운동이 이 지역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이 소요는 1936년 10월 5일의 자치법령 발표로 끝났다. 이듬해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바스크 분리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이 운동의 과격파들은 스페인 중앙정부에 대해 테러 활동을 전개했다.

3 2004년 3월 11일 아침 스페인 마드리드의 통근열차를 목표물로 인근 몇 개 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폭발 공격. 폭발은 오전 7시 37분에 시작하여 몇 분 동안 지속되었다. 폭탄 10개가 사망자 191명과 1,8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면서 도심에 있는 아도차역 주변과 역내에 있던 열차 4대에서 폭발되었다. 스페인 정부와 언론은 즉각적으로 폭발의 배후로 에테아(ETA)를 지목했다. 에테아는 바스크족 분리주의 조직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력 투쟁노선을 유지했고, 그들의 활동은 최소한 8백 여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2007년 10월 1일, 주로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슬람 근본주의자 18명과 자국의 공범자 3명이 폭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한국 생협은 ‘결사’에 대해, 생명, 민주주의, 생태, 환경, 지역, 농업 등 큰 사회적 담론을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안전한 먹을거리, 거품을 뺀 낮은 가격, 더 나은 서비스, 공동구매 등 생활 속의 소소한 결사에 대해서는 ‘운동은 안하고 사업만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낮추어보는 경향이 강하다. 큰 사회적 담론은 대부분 정당, 종교, 시민운동 등의 영역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결사체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며 운동에 집착하는 ‘이념의 과잉’이라고도 하겠다. 그 결과 사업과 사업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흘러왔다. 사업을 경시하면 사업체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사업 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결사를 운동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일상적인 요구로 이해해야 협동조합의 성공과 대중화를 기대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체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주식회사를 적합한 형태로 생각할 것이다. 자본 중심의 회사를 설립하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의 강한 관성에 매몰될 것이고 어느 순간 자본 집중이 발생하면서 소수의 지배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지금 전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흐름이다.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한다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관성에는 시달리게 되겠지만 적어도 1인 1표라는 장치로 인해 자본의 지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은 말과 같아서 잘 다루어야 한다.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고삐와 안장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장비는 비단 경주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여행을 하고 밭을 가는데도 필요하다.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사업은 주식회사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럴 때 굳이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협동조합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다. 협동조합을 공동체나, 시민운동 단체로 생각해서는 협동조합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2) 협동조합 생태계의 본질은 협동조합 간 협동인가?

맞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 우선 그 정의를 살펴보자.

제 6원칙.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역, 국가, 인접국가간, 국제적인 조직을 통한 협동으로 조합원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이 정의는 협동의 목적이 조합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을 비슷한 성향의 협동조합끼리 뭉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조합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농협처럼 정부 기관화되어 농민의 결사와 멀어진 조직과 협동하는 게 유효할 수도 있다.

여기서 협동의 목적은 정부 지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헤쳐 나가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 생협과 농민 협동조합이 연대하는 것이다. 이는 시해도 아니고 이념을 위한 단결도 아니다. 소비자 생협도 농민 협동조합과 협력함으로써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용도 줄여, 결국 조합원 서비스에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상호호혜의 원칙이 작동되어야만 지속 가능하다.

2. 협동조합 생태계, 왜 필요한가?

1) 소비자의 필요: 협동조합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보통 시민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자녀, 건강, 직장, 교육, 친족, 주택, 재테크, 학교, 종교, 자동차, 문화, 친구, 여가 등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먹을거리 안전과 공동구매에 관한 일은 대부분 후순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문제에 가깝다. 가족의

삶을 행복하고 운택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기여가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생협을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생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1년에 1백만 원이라 가정하면 나름 큰 비중이겠지만, 시민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높지 않다. 먹을거리는 생협에서 해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이를 위해 사교육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재벌기업이 건설한 고가 주택과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생협의 발전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회적 영향력은 그리 높을 수 없다.

일본 생협의 전체 조합원은 2,400만 가구로 가족의 수를 포함하면 6천만 명에 가깝다. “일본의 생협운동이 단순한 소비자 개념을 폐기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생활자 개념을 도입해서 세계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고 박승옥은 극찬하고 있다.⁴ 과연 그럴까? 일본의 생협 조직물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이지만, 농업과 생활 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운동가의 이론적인 규정보다 실제 조합원의 생각과 생활이 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조합원의 생각과 생활이 바뀌려면 충분한 동기와 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협이 소비의 영역만이 아니라 의료, 주택, 교육, 공제, 실버, 일자리 등 생활전반의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 좋은 학벌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굳이 사교육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집을 사기 위해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기임대를 통해 안정된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생협, 실버노동 등을 준비하고 공제사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⁵ 그러면 소비자가 생협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백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편익(benefit)이 커질수록 소

⁴ 박승옥, 앞의 책 61쪽.

⁵ 신성식,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생활평론』 8호, 84~85쪽.

비자는 이웃과 함께 하는 삶으로 변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협동조합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2) 사회적 필요: 한계를 인정해야 지속가능하다

자본의 속성은 굶주리지 않아도 사냥을 하는 사자와 같다. 먹지도 않을 사냥을 하는 것은 낭비이다. 이런 낭비가 반복되면 합리적인 먹이사슬 체계가 끊어지게 된다. 먹지도 않을 사냥감을 잡는데 몰두한 사자로 인해 먹이사슬 체계가 깨지고, 결국에는 사자도 사냥감이 없어서 굶어죽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 이런 학습효과를 통해 사자는 먹지 않을 것은 사냥하지 않는다.

사자와 달리 인간은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벌어 놓고도 더 갈구하는 사람들로 넘친다. 먹지 않을 것을 사냥하는 사자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비극이 생긴다. 자기 생전에 파국을 보게 되는 사자와 달리 인간은 자기와 다음 세대까지도 불필요한 풍요를 누리게 되고, 이런 불일치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든다. 최근 모 재벌 그룹 회장이 이 같은 일로 구속되었는데 누구도 이를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돈이 돈을 부르는 게 물리적 관성이고 문화이며, 경제 법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피로가 극심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는 이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복합체계는 자본의 무한 증식을 제어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이 대체하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사회적 제어장치가 만들어 질 것이다.

3) 협동조합의 필요: 효율성을 추구하며 일자리와 수익을 바꾸어야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와 같은 사회운동 조직은 효율성이라는 낱말을 달가

워하지 않는 것 같다. 역사에서 보면 효율성을 싫어한 오래된 선배가 있는데, 바로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⁶이다. 효율성은 산업 생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진화 법칙의 기초를 이룬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고효율의 자동차, 절전형 전기기구, 재생에너지 등은 바람직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효율성이 산업부문에 적용되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의 증가는 수익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줄인다.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자본 기업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관성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생존과 수익 추구가 본능이 되도록 DNA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율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효율성은 유지하되 수익성을 줄이면 된다. 효율성은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이지만 수익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익이란 연구개발과 재투자를 위한 수익이 아니라 자본 배당을 위한 수익을 의미한다. 자본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지배가 확실해야 한다. 자본 지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협동조합 방식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보여 준 것은 여기까지다.

지난 170년의 협동조합 역사는 길지도 짧지도 않다. 급진적인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흐름과 비전도 흐릿한 안개와 같을 뿐이다.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자본제 기업의 몰락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난 상대적 우위일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

⁶ 1811~1817년 영국의 중부·북부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파괴운동. 당시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어서 직물공업에도 기계가 보급되어 가는 한편, 나폴레옹전쟁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에 빠져 고용감소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의 체불 등이 성행하는 상태였으며, 거기에다 물가는 나날이 올랐다.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을 기계의 탓으로 돌리고 기계 파괴운동을 일으켰다. 기계에 의한 상품의 대량 열가생산이 수공업적 숙련노동을 압박하여 임금을 인하하게 한 데 원인이 있었다. 이 운동은 정부의 탄압과 사회·경제 경제의 호전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고 바로 진압되었으며, 이후로는 의회 개혁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한 시대흐름에서 자본제 기업의 실패가 협동조합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전과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

자본주의는 투자자에게 너무나 좋은 주식회사라는 구조적 장점과, 승자독식 문화라는 강력한 동력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이 이러한 동력을 대체하려면 어떤 에너지와 동력 기관을 만들어야 할까? 이는 개별 협동조합에서 찾기 어렵다. 협동조합은 약자들의 결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자아실현의 노동이 자본기업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협동조합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의 동력은 역시 협동에서 찾아야 한다. 협동의 효과를 제도화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협동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생태계이다.

3. 협동조합 생태계의 주요 기능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주요 사업체 모델이 된 것은 유한책임과 무한권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로 인해 투자자에게 최고의 이점을 제공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인해 자본조달이 쉽고 대규모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주식회사는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일된 모델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협동조합은 유한책임과 유한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에서 자본 권리는 지분에 따라 의사결정과 자본 배당을 결정하고 소유 지분 비율의 제한이 없는데 반해, 협동조합에서는 지분과 상관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1인 1표) 제한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 배당할 수 없다. 또한 전체 자본에서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약점 때문에 협동조합은 자본 투자를 조직하기 어렵다. 또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사업 수행의 여러 분야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제도화되고 인프라로 만들어지고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한다.

○ 시장 확보

영업사원은 열대지방에서 난방기를 팔고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수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중소기업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한 사례로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2009년에 납품업체들에 부담시킨 판매장려금과 경품비(판촉비), 반품금액이 4천737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이마트 당기 순이익의 8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시장을 확보하는 일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지불이었을 것이다. 시장 확보의 어려움은 어쩌면 중소기업보다 협동조합에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 생태계의 첫 번째 과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협동조합이라는 네임카드만으로 시장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생협이 구축하고 있는 시장은 농민, 노동자 협동조합의 좋은 시장이 되고 있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품·기술개발 R&D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명하는 원리는 공동구입, 공동사업의 효과이다. 하지만 이 효과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특별히 협동조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독과점이 일반화된 시장에서 공동구매의 효과는 한계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힘으로 대형마트를 누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는 재래시장보다 큰 규모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품 개발이다. 대형마트에는 없고 재래시장에만 있는 특화된 상품으로 차별화해야만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똑같은 상품으로는 대형마트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품개발은 쉽지 않다. 대형마트의 상품 개발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상품 개발에는 규모의 효과가 적다. 다른 왕도가 없다. 개발은 연구와 집중력, 아이디어에 의해 좌우된다. 서비스도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그런데 상품 또는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 및 자본투자가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는 개별 협동조합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많다. 혼자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는 것이 협동의 원리이다. 생태계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을 위한 R&D 기능을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창업 투자 자금

창업 후 몇 년 안에 실패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자본 조달이 더 어렵다. 자본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굳이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 보다는 자본을 통한 지배가 수월한 주식회사를 선호할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려 할 때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창업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사업 실패를 줄여준다. 자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고, 창업 이후에도 시장 확보를 비롯해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조언이 가능하고, 협동조합 인프라를 쉽게 이용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돈 가는데 마음 가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의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서 조성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설립한다면 이 역할을 전문화할 필요도 있다.

○ 인력 개발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할 때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력 문제다. 인력 문제는 다른 부족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장 개척, 기술개발과 투자자금은 제도와 인프라, 시스템으로 줄여갈 수 있는데 반해, 인력의 문제는 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화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문화가 축적되어야 한다. 지난 100년 간 한국 사회

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윤리가 무너지고 승자독식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일제의 앞잡이는 출세한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몰락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군부세력과 그 후손들, 또한 그들과 결탁한 재벌들이 21세기에든 기득권을 유지하며 주류로 살고 있다. 이런 사회문화에서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출세하고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라 여긴다. 이런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의 일꾼으로 들어와 일하고 주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함께 행복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협동조합과, 승자독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협동조합의 일꾼은 양립하기 어렵다. 인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은 기능적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다. 따라서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 충격 완화 장치: 기금과 공제

쌍용차 해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표현하면 쌍용자동차라는 상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걸 보면, 잘 팔린다고 꼭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팔리지 않았을 때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해서 사업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고용유연성이라고 에둘러서 이야기한다. 냉정하게 보면 이를 도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사업은 언제나 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협동조합 진영에서 파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부진과 파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협동조합도 풀어야 할 문제이다. 파산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협동조합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파산한 기업의 노동자와 부진한 사업체의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활비, 재교육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기금과 공제 등에서 재정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협동조합 생태계의 형태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후, 지형 등에 따라 독특한 형태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식물군이 중심이 된 생태계는 물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협동조합 생태계도 다양하고도 독특하게 형성되어 왔는데,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레가, 캐나다의 퀘벡, 일본 생협 등이 그러하다. 각 나라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같은 듯 다르게 형성되었고 특징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대중들의 어떤 요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사업화된다는 것은 역사, 사회적 필요, 리더가 적절하게 결합된 결과이다. 이 과정에 부침이 있지만 역사적 흐름과 합쳐지면서 물줄기가 형성된다.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된 몬드라곤이 결국 교육생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로 발전되었다.⁷ 몬드라곤이 속해있는 바스크 지방이 스페인의 다른 지방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몬드라곤은 교육기관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 퀘벡을 이야기 할 때 캐나다 프랑수아인들은, 캐나다 영국인이 벌인 식민지 전쟁과 지배를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 이주민이 받은 탄압과 멸시는 주민 70%가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배경이 된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대중들이 필요한 일에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비록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필요를 공동의 연대라는 기본원칙에 맞추어 사업과 조직을 발전시켜 왔다. 각각의 생태계 또는 복합체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는데 이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 생태계 1형태: “소유하고 경영한다”: 몬드라곤과 같은 형태로 관련 협동조합과 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방식
- 협동조합 생태계 2형태: “소유하지만 경영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형태는 자본 기업에서 많이 존재한다.

⁷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설립자인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Jose Maria Arizmendiarieta) 신부는 1943년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그 후 13년 뒤인 1956년, 5명의 젊은이와 함께 석유난로를 생산하는 공장인 울고르(ULGOR)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다.

- 협동조합 생태계 3형태: “소유하지는 않으나 협력한다”: 이탈리아 레가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같은 목적을 같은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협력하는 방식이며 일부 소유(투자)는 가능하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2형태의 경우이다. 소유하되 경영하지 않는 구조는 협동조합 기업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노동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별도의 사업체로 발전하는데에는 창업 투자 자금, 시장 확보, 경영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2형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적합한 영역이 된다. 각 영역의 상호관계는 밀접하기도 하고 느슨하기도 한데 이는 사업 비중의 변화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보면 아이쿱은 1형태와 2형태로 구성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3형태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1형태는 주로 사업 부문으로, 농산물과 식품 가공 및 유통, 건축, 통신 등 조합원의 요구 실현에 직접적인 부문이다.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체와 영농활동을 하는 부문은 2형태에 해당한다. 여기에 직원부문이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분화될 때도 2형태를 거쳐 3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3형태는 기본적으로 생협 활동 비영리부문과, 사회적으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협동조합과 관련 기업이 해당된다. 3형태가 커질수록 생태계는 안정적이고 심오해 질 것이다.

5. 마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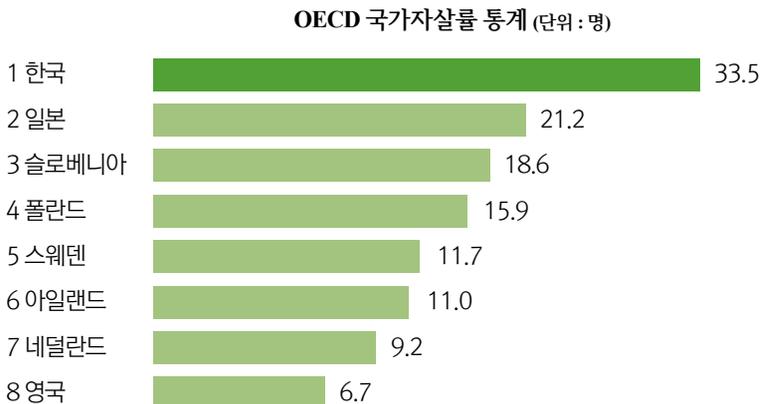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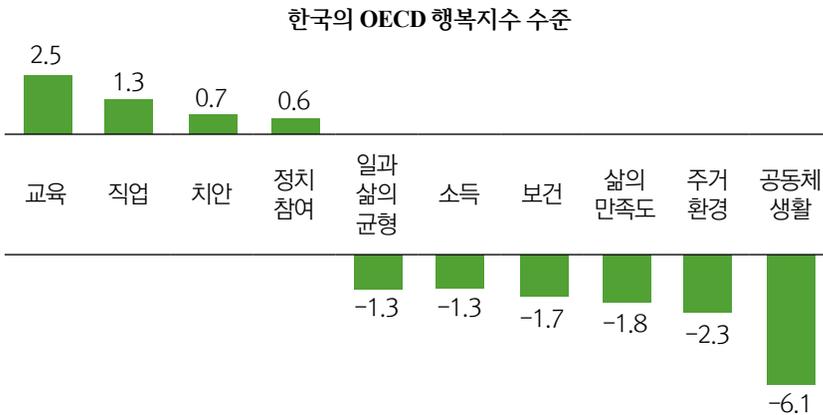
세상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협동조합은 만능이 아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본의 질주를 제어할 유력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협동조합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데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협동조합의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사업의 결과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본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자본 기업

은 두 발 자전거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협동조합은 세 발 자전거이다. 두 발 자전거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 자본제 기업에 없는 바퀴 하나는, 생협에서는 조합원 조직이고, 전체적으로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넘어질 공포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세 발 자전거를 타야 된다. 세 발 자전거는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icoop](#)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 ((주)아이쿱축산 상무대행)

2012년 12월 30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미국 여론 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148개국에서 각각 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체감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의 행복 순위는 97위에 불과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제규모 15위, 무역규모 8위에 이르는 한국의 현주소다.



* 2010년 10만 명당 자살률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서 행복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평가의 기준이 ‘자산’이 될 만큼, 행복의 필요조건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우리가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다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을 문제 삼고, 부정부패에 분개하는 이유도 그것이 ‘다함께 행복하기’에 저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쿱생협의 궁극적 목적도 ‘다함께 행복하기’다. 여기에서 다함께란 생산자와 소비자, 아이쿱생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생산자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의미는 물품가격의 인상을 의미하고, 이는 소비자들이 더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직원의 복지와 근로조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해 급여를 높이는 순간 물품의 유통비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다. 생산자가 더 싸게 공급하거나,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직원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대립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1.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다함께 행복하기란?

아이쿱생협은 출범 초기부터 “서민에게 유기농산물”, 그리고 “한국 농업은 생협이 지킨다”고 주장해 왔다. 듣기에는 매우 좋은 이야기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충돌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층에게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값이 싸야하고, 값을 싸게 하려면 매입가도 싸야 한다. 하지만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인 농업과 농촌 사회를 유지하려면 생산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생산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거기에 직원들의 보수와 근로 환경도 해마다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쿱생협은 1998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이 기치를 유지하며 운영해 오고 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반시장의 경우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필자는 생협에 들어오기 전 유·아동복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프랜차이즈였던 이 업체의 판매 점포 마진은 45%였고, 전국 점포망 관리가 힘들어 지역별로 영업소를 두었는데, 영업소 공급 가격이 소비자가의 45%였다. 즉, 1만 원짜리 물품을 본사가 영업소에 4,500원에 공급하고, 영업소는 5,500원에 판매장에 납품을 하고, 소비자는 판매장에서 1만 원에 이를 구입하는 것이다.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품가격의 55%라는 이야기다. 본사가 소비자가의 45%에 출고할 수 있다는 것은 하청업체에서 납품받는 단가는 그보다 낮을 것이고, 하청업체의 이윤을 생각하면 실제 제조 원가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일반시장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아이쿱생협은 이런 유통비용을 낮춰 산지에서 더 싸게 매입하고 조합원들에게 더 싸게 판매 할 수 있었고, 규모의 성장을 통해 내부 수익을 늘려 노동조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해 올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다. 아이쿱생협은 성장이나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사회의 소금이 되겠다고 선언해 왔다. 내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소비하기 위한 적정규모로 전체가구 수의 3%를 목표로 해왔다. 규모의 성장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입과 근로조건에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 물가도 오르고, 전세 값도 올라가는데 급여가 동결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과연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거나 유지될 수 있을까? 생산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수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산자들은 만족할 수 있을까? 오르는 인건비와 생산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생협의 조합원들은 만족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무한성장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이쿱생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위의 모든 경제가 마찬가지다. 지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인구가 무한성장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쿱생협의 궁극적 목적이 다함께 행복하기인데 무한성장이 불가능하고, 수익의 창출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천년을 가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 발생할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더구나 먹을거리 시장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총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생산자, 소비자, 직원으로 구성된 아이쿱생협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다함께 행복하기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2. 복지, 그리고 협동조합 생태계

다함께 행복하기의 최종목표는 복지다. 그리고 복지는 재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동조합 생태계는 바로 이런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먹을거리만 유통비용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다. 아이쿱생협은 이미 전국 물류의 인프라와 인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지 때문이다. 아이쿱생협이든 국가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은 복지국가다. 우리가 국가 전체를 만들 힘은 없지만 아이쿱생협이라는 공동체가 다함께 행복하기를 꿈꾼다면 내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어떻게 다중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복지를 마련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복지의 근간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1년 진료비가 900크로나(15만 원)를 넘으면 바로 ‘무료 진료 카드’가 나온다. 이때부터 병원 치료비는 모두 무상이다. 약값도 1,800

코로나(32만 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환금액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입원비는 하루에 80코로나를 별도로 낸다. 입원했을 때 먹는 세끼 식사와 간식 값이다. 노동자가 병이 나면 병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부당하게 해고 되는 일은 없으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청에서 준다.(위키백과 참조)

2012년 2월 9일자 <한겨레신문> 백재현 기자의 기사에는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최근 독일의 슈피겔지에 소개된 내용이다. 소피 예젠이라는 덴마크의 한 여대생은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737유로(한화 약 110만 원)가 너무 적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덴마크에는 대학 등록금이란 것이 아예 없다. 더구나 모든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한 달에 평균 700유로를 받는다. 이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무상이다. 부모의 수입이 있건 없건 받는다. 또 고등학생들도 상급학년이 되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가량씩을 받는다……그녀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나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는 대학까지 학비가 없다. 스웨덴은 이런 복지제도를 위해 세금 부과율이 50%에 이른다. 스웨덴의 의사는 공무원이다. 하지만 결코 급여가 낮지 않다. 그래서 의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도 만족하는 복지는 재원에서부터 마련된다. 인심은 곳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1) 고임금보다 복지중심의 체계가 필요

스웨덴처럼 국가차원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이쿱생협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활동가,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체계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냥 급여를 올려주면 해결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급여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야 한다. 같은 자금을 복지로 돌리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만 올리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급기야는 대립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 생산자의 소득은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소비자 활동가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직원만이 아닌 생산자, 소비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그룹차원의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 복지는 우선 기여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핵심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핵심활동가가 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하여,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비와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이 마련된다면 급여 때문에 생협을 그만두는 직원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급여를 많이 받으려는 큰 이유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급여가 높지 않아도 다닐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면 충성도 또한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생산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 된다면 가격으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 활동가의 입장에서도 자원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가 좋으면 급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2)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수익구조가 필요

그룹 내에 만들게 되는 복지제도는 그룹 내 조직 간의 결속력을 높이게 되는 효과도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통해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성공하는 사례도 나오겠지만 실패하는 조직도 나올 것이다. 실패하는 조직도 이런 그룹 내 복지제도에 의해 구제될 수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과감한 도전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문제는 바로 이런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먹을거리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더구나 아이쿱생협은 반폐쇄 유통이다. 우리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우리 직원이 유통해서 우리 조

합원이 사먹는 구조에서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함께 행복하기 위해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협동조합 생태계’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공제(보험), 장례, 통신 등은 조합원, 직원, 생산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다. 현재도 모두 어디엔가 의지해서 부담하고 있는 자금이다. 그리고 이런 분야의 유통비용은 먹을거리나 의류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우리 가족의 보험료 총액은 월 30만 원이 훨씬 넘는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상해보험을 쉽게 해약하는 것도 어렵다. 보험료를 타본 기억은 까마득하다. 아이쿱생협이 공제를 한다면 그래서 조합원 중 10만 가족이 월 30만 원짜리 공제를 든다면 한 달에 모이는 돈만 300억 원이고, 연간 3,600억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우리는 보험설계사를 모집할 필요도 없고, 비용이 발생하는 조직 내부 구조도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같은 조건에 대해 더 좋은 보상을 하고도 더 많은 자금을 내부에 쌓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복지기금을 만드는 데 활용 하여야 한다. 물론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직접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즉, 공짜 복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는 그룹차원에서 진행해야 하고 다수가 그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을 반드시 하는 문화를 정착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공돈이 되고, 이권다툼으로 변질 되거나, 쉽게 번 돈이라는 인식에 함부로 자금을 다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3) 복지의 최우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새롭게 진출한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물론 이런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도, 사교육 시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시장이 되

는 이유도, 노사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노노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이유도,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로 확대되고 양극화 현상의 근본원인이 되어 사회문제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굳이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허리 휘어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면 젊은 나이에 오로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득바득 할 필요도 없다. 이를 모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복지의 최우선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4) 노동시간 단축, 교육과 훈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

아이쿱생협도 업무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기도 하겠지만 기존의 업무들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작업도 해야 한다. 비효율적 구조로 인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함께 공멸하자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을 내고 성과를 내는 것만큼 일자리를 나누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5일 근무(노동시간)를 줄여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룹 내 인사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를 효율화 하고 고도화 시키고, 단순 노동을 기계화 전산화로 대체하다 보면 기존의 업무가 사라지거나 축소 될 수 있다. 이때 남는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퇴출되는 사업도 있고 새롭게 투자되는 사업이 있게 된다. 특히 경제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부양사업과 사양사업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새로운 사업에 적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시스템 및 인력 이동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 아이쿱생협 그룹이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기계화와 IT산업화로 인해 생산물과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농촌의 노동력은 26% 감소하였다. 그 다음 10년 동안 노동력은 다시 한 번 35%이상 감소하였다. 1960년대의 감소는 더욱 극적이다. 잔여 노동력의 약 40%가 단 10년 동안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때는 산업혁명으로 농업인구가 그나마 산업화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미 전산화와 기계화로 산업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IT산업, 로봇산업과 같은 신사업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국제 기계공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윌피싱어는 제네바에 있는 국제 금속노련의 다음과 같은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향후 30년 이내에 세계 전체 수요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현 세계 노동력의 단지 2%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니 높은 임금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꿈꾸기 어렵다.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점점 단순노동의 시간당 단가는 줄어들고 있으며, 산업에 따른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모든 복지를 개인 스스로가 마련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을 극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패륜, 보험사기 등 온갖 사회문제를 낳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의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3. 아이쿱 생협이 그리는 ‘행복한 노동’

1) 소외된 노동에서 소유 노동으로

다함께 행복하기 위한 노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건강한 노동은 소외받지 않는 노동이어야 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처럼 노동자협동조합이 가

장 이상적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에 노동의 결과물인 성과에 대한 혜택도 받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 책임도 진다. 철학적으로도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착취 없는 노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이쿱생협은 이를 ‘소유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스스로 출자하고 스스로 노동하며 그 결과물에 대해 온전히 받아 안는 구조다.

몬드라곤은 노동자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에서 스스로가 노동자로 일한다. 노동자이면서 일부는 이사를 겸임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다. 따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 스스로가 이사가 되어 회사의 사업계획과 정책에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면 된다. 경영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경영은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 받을 수 없고,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 할 수 없다. 경영과 노동을 같이하는 구조다.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노동하면서 경영하는 것과 같다. 다만 노동자협동조합은 그 규모를 더 키운 것이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동업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출자(자본)비율이 높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노사관계가 훨씬 원만할 수 있다. 물론 몬드라곤의 경우도 노조와 투쟁과정을 거치는 흥역을 앓은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경험 후에 갈등도 훨씬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기업처럼 노동자와 사측이 적대적 관계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도 원수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하지만 아이쿱생협은 몬드라곤과 차이가 있다. 시작부터가 다르다. 몬드라곤은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시작했다. 몬드라곤은 무작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거기에 우리는 농업문제 해결까지를 이미 선

언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주식 보유 비율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직원이 1:1:1로 출자 부담을 하는 것이 황금비율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쿱생협은 생산지 정책을 통해 1차 생산의 부족한 경쟁력을 가공과 유통을 통해 보완하여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 실현으로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고,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일정 지분을 1차 생산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공을 통한 수익을 1차 생산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1차 농산물만 팔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차와 2차 가공의 관계를 상호 적대적 관계에서 협동의 관계로 만들어 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아이쿱생협의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는 근무하는 노동자가 100% 출자하는 모습보다 1차 생산자가 함께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함께 나누는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가 100% 출자 할 경우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노동자 위주로만 계획되고 추진 될 위험이 있다. 아이쿱생협이 처음부터 주창해 왔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생산자가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노동자들이 중심되어 계획하는 사업 계획들이 1차 생산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도 1차 생산자들의 출자는 필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1차 생산자나 가공생산자는 모두 공급자의 입장이다. 소비자가 투자지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기업의 중요한 정책에 소비자의 입장이 배제된 채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도 조합이든 개인이든 적절한 방식을 통해 가공생산지의 적정 지분을 갖고, 소비자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 지분을 갖지 않는 황금분할을 통해 아이쿱생협을 구성하는 전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조율하고 조정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하기를 실현해야 한다.

○ 노동배당

출자자는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하되 출자에 대한 배당은 적정한 선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자칫 엉뚱한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성과창출로 인한 수익이 많아져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스스로 출자하고 출자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출자배당 이외에 노동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 받는 성과급과는 또 다른 성격이 있다. 일반 시장의 기업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한마디로 계약 이외에 별도의 보너스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시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주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받는 노동배당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에 대해 받는 배당이다. 결코 시혜가 아니다. 역으로 마이너스 성과물이 만들어진다면 그것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노동자의 성과급과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 왜곡된 인간관계 개선

노동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 지분을 갖는 것은 인간관계에도 매우 중요하다. 경영진의 임명과 해임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총회나 이사회에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경영을 책임지는 자가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일제국주의의 잔재와 독재정권, 병영국가의 군사문화가 수십 년 간 뿌리 깊게 내려져 온 역사다. 군사문화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수직관계로 설정하고 토의와 협의, 연대와 협동이 아닌 지시와 명령, 감시와 통제의 문화를 고착시켜 왔다. 권력만 잡으면 권력 아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조직문화의 청산은 짧은 기간에 정리되기 어렵겠지만 노동자이면서 이사일 수 있는 구조, 노동자이면서 합법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로서 경영진의 임명과 해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구조는, 이런 왜곡된 인간관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 규모가 커지고 인간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으면 직접민주주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보가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의 직접 대면이 일상적인 조직의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회사의 경영진을 투표로 뽑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책에 더 많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 되었을 때 팀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책임지는 자가 되고 노동의 주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자본의 선순환

다양한 사업의 진출은 자본의 순환을 돕는다. 지금은 조합원의 자금이 먹을거리 부분에만, 그것도 외식은 포함되지 않는 수준에서 돌고 있다. 볼로냐와 부산의 비교 동영상에서도 나타나듯 자본의 순환은 매우 중요하다.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이 많을수록 내부의 자산은 축적되고 선순환하기 어렵다.

월마트는 한때 고용을 많이 창출했다는 이유로 어느 국가에서는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월마트의 성장은 주변 소매점을 폐업시켜 버렸다.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지역사회에서 순환하던 돈이 월마트로 빨려 들어가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낮춰 버린 것이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신규창출 일자리가 2개라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3개라는 이야기도 있고, 시카고 지역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월마트가 문을 열면서 1마일 내 306개의 소매점 중 1/4에 달하는 82개가 첫해에 문을 닫은 기록이 있다고 한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했다. 피처럼 내부에서 순환되어야 하는데 이런 피 같은 돈이 외부로 반출되면 혈액부족으로 그 지역의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3) 노동의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미국에는 'Valve'라는 온라인게임회사가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

지 않았지만 Half Life 시리즈를 시작으로 Counter Strike 등 FPS¹ 분야에서 획을 긋는 게임들을 잇달아 출시한 회사다. 이 회사는 상사가 없이 운영되는 회사다. Valve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We've been boss-free since 1996.

Imagine working with super smart, super talented colleagues in a free-wheeling, innovative environment—no bosses, no middle management, no bureaucracy. Just highly motivated peers coming together to make cool stuff. It's amazing what creative people can come up with when there's nobody there telling them what to do.

“우리는 1996년부터 상사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상사, 중간조직, 관료제가 없는 환경)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어있는 사람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제품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mynameisdj님의 개인블로그에서 발췌)

Valve의 직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해서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이 소속할 팀을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이 일하는 시간까지도 스스로 정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의 급여다. 물론 게임회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눔과 협동의 조직문화이다. 아이쿱생협은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¹ FPS: First Personal Shooter의 약자로 1인칭 슈팅게임을 말함.

조직이 분화되고 독립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만 두게 되는 시기가 오고 새로운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나눔과 협동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조직이기주의가 발생될 수 있고 이는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에서 이야기하듯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부(富)가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구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그만한 재산을 가진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바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나누어서, 일자리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다. 아이쿱생협은 ‘시즌2’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55세인 정년에 대한 논의다. 치매에 걸리거나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70세까지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정년연장으로 하지 않고 ‘시즌2’라고 명명한 것은 이때부터의 노동형태는 그 이전과 다른 형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에서 추진하는 정년과 임금피크제는 근로는 그대로 하면서 임금만 낮춰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이쿱생협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즌2’는 55세가 넘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시간당 급여를 낮추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지급 총액은 줄어들지만 개인적인 여유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이 역시도 재원이 있어야 하고, 선배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과 성과에 대한 나눔의 미학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선후배가 자연스런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더 있다. 평등에 대한 개념이다. 다함께 행복하기를 주장하다 보면 쉽게 빠지는 오류가 ‘평등’의 오류다. 평등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내용적 차별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평등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적절한 제한은 가하되 일정 차이를 두어야 사람들의 동기

부여와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벌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나누고 협동하면 행복한 노동은 가능하다

‘다함께 행복하기’는 말만큼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더욱이 다함께 행복하기 위한 노동은 더욱 쉽지 않은 문제이다. 노동의 결과물이 노동자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세대에 이를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 규모를 키우고, 경제적 여력을 만드는 것은 그 이전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꿈을 수천, 수만 명의 생산자, 소비자 직원들이 다 함께 같이 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상이몽이 아닌 정말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같이 위기로 느껴야 하고, 성과를 같이 성과로 인정하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통은 단순히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쓰는 단어가 다르고 단어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문장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공부는 억지로라도 시켜야 한다는 주의다. 생각이 없고, 고민도 없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뭔가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처럼 황당하기 쉽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눔과 협동의 문화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몸으로 체화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책적 뒷받침과 리더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꿈에 부푸는 것은 아이쿱생협의

전략과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들이 끊임없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가 창출되는 만큼 일부 가진 자의 부만 더 축적되는 것은 다함께 행복하기의 절대적인 적이다.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공생할 수 있고 다함께 행복할 수 있다. 일자리를 나누고, 부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삶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내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 놓을 수 있는 문화가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내 것을 내놓아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가 안 된다면 아이쿱생협이 그룹 내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서 그런 모습을 실현해 낸다면, 국가 또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2012년 아이쿱생협은 ‘소비자활동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협동의 힘으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조직인 협동조합은 사업체를 운영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 ‘소비자활동연합회’는 사업을 담당하는 연합조직인 ‘생협사업연합회’와 분리해, 조합원 참여를 만들고 생협운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연합조직이다. 조직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활동인 셈이다.

전국 74개 지역조합 중 66개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조직의 새로운 이름인 ‘소비자활동연합회’는 아이쿱생협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혁신, 미래에 대한 지향까지 내포하고 있다.

2011년까지 아이쿱생협의 전국 연합조직은 크게 사업연합을 담당하는 아이쿱생협연대(이하 생협연대)와 활동연합을 담당하는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존의 생협법에는 개별 생협의 연합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생협연대는 사단법인으로, 연합회는 임의단체로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2011년 생협법이 개정되어 생협연대는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로 생협법에 따른 법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활동을 만드는 조직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체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활동연합회는 형식과 내용에서 기존의 생협연합회와 차별성을 갖는다. 활동에 대한 의결과 지휘의 권한을 지닌 체계인 이사회를 없애고,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활동과 소통을 위한 체계인 ‘권역별대표자회의’를 강화했다.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국 지역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생협

운동의 의제를 다루는 ‘전국대표자회의’를 여는 등,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논의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바꾸었다. 또한 직원 그룹을 별도로 분리시키고 활동연합회는 선출된 조합원 대표와 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한다. 생협활동의 핵심은 조합원의 자발성과 창의성, 활발한 소통에 있다. 따라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었다. 지역조합 활동가들과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소통으로 새롭게 활동을 혁신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한국 사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 몇 곳의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자체’를 선언했고, 동시에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협동조합은 과연 경제침체기의 한국 사회가 기댈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시기에 생협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협동조합이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협동조합과 협동이라는 사회적 유산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생태계를 논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소비자협동조합에서 활동(운동)을 기획하고 모색하는 활동가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시기이다.

1. 소비자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생태계의 의미

1) 협동조합 생태계란 무엇인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업과 조직 양 측면에서 크게 발전했다. 한국에 있는 생협 전부를 계산하면 조합원 60만 명, 연간 공급액 6천억 원 이상의 규모이다. 하지만 생협이 조합원 개인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¹ 주요 상품이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생협

1 2009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실시한 <조합원 의식과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평균 가구 소득은 406만 원(인터넷조합원)~433만 원(매장조합원)이었다. 이 조합원들의 식품 구입비는 49만 2,600원으로 이 중 67.26%인 33만 1,300원을 아이쿱생협에서 구입하는 월 식품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의 필요성이 식품에 대한 요구 해결에 머무른다. 또한 조합원 개개인들이 상품을 생협에서 구매하는 것과 일반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협동조합 생태계란 조합원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부분의 요구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생협 조합원은 식품은 생협에서 구입하고, 식품 이외의 모든 상품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해왔다. 하물며 금융, 의료, 통신, 주택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중 있는 여러 가지를 생협에서는 충족할 수 없었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이런 생활의 모든 부분을 협동조합이 담당하여 조합원 삶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신생아들은 의료생협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어린이들이 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특별한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스웨덴의 가족들은 협동조합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 영국에서는 소비자가 국내 최대의 보험회사인 영국생협(The Co-operative Group) 소유의 CIS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스페인의 몬드라곤 노동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생활의 대부분을 계열별 협동조합을 통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초원의 농가는 전력협동조합에서 전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포르타주라 프레리에서는 조합원이 스스로 세운 장례협동조합에서 인생 최후의 의식을 행합니다.”²

협동조합의 사업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이윤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용을 위해 운영하므로, 조합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삶을 마칠 수 있다. 한 개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요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있음을 세계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협동조합의 역사와 제도가 일천하고, 이미 독점화된 자본기업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

2 쿠리모토 아키라, 김형미·주영덕 옮김, 『21세기 새로운 협동조합원칙』, 2009년, 59~60쪽.

가 다양해지는 것만으로는 협동조합생태계 조성을 다 말할 수 없다.

협동조합은 시장의 실패를 고치고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조합원의 삶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의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사회적 공정을 추구하고, 환경에 대한 배려, 윤리적인 노동과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인 실천으로 다양한 복지의 대안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협동을 통해 해결해 본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경험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만든다. 참여가 많아지고 반복되면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어야 협동조합생태계 조성은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다.

“좋은 학벌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가능하면 굳이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집을 사기 위해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기임대를 통해 안정된 주거가 가능하다. 의료생협, 실버노동 등을 준비하고 공제 사업이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³

조합원은 처음 생협에 가입해 식품을 이용하면서 “이 식품 안전하다고 하더니 질도 좋고 맛도 좋네” 하면서 점차 필요한 식품 모두를 생협에서 소비하게 된다. 이처럼 “생협이 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거라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통신, 레저, 의료, 공제, 금융, 주택 등등 넓혀진 사업 영역으로 소비가 옮겨오면서 생활 전반의 필요성을 해결한다. 동시에 생협이라는 공간에서 기존 주류 문화와 다른 삶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삶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변화한다. 이런 흐름은 생활 문제의 대안이 되는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씨앗이 된다. 바로 아이쿱생협이 그리는 협동조합 생태계이다.

3 신성식,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생협평론』8호, 2012년, 84~85쪽.

2) 사업과 운동의 순환으로 성장하는 협동조합

아이쿱생협의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의 내용은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서 생협이 다양한 사업분야(생활용품, 레저, 통신, 공제, 의료, 주택 등)로 진출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각화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⁴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조합원이다.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의 개방성, 대중성, 무임승차의 경향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이 단순한 고객이 되는 경향이 심해진다. 사업의 성공에 집중할수록 소비자는 늘지만 진정한 주인의 역할을 하는 조합원은 줄어든다. 사업은 성장해서 이익과 재산이 축적되는데 주인이 소수에 불과하면 성과에만 집중하는 낮은 수준의 관계만 형성될 뿐이다.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발생하거나 관료화가 심해진다. 협동조합이 지키고 풍부하게 해야 하는 민주적인 운영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우리보다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협동조합에서도 사업과 운동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이를 확인해 준다.⁵

사업은 성장하지만 운동(조합원 참여와 활동)이 함께 발전하지 못하는 협동조합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의 성장을 힘으로 삼아 구성원들의 비전을 만들어가면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하게 맡는 조합원 규모를 늘려가야 한다. 참여와 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협력과 협동의 경험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한 조직과 운동은 사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힘이 된다.

사업과 운동의 순환체계는 아이쿱생협의 역사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아이쿱생협은 1997년 설립 초기 경영난에 직면한 작은 생협들이 모여 물류사업을 통합하여 경영 효율을 꾀하는 한편, 지역생협은 지역에 결합하여 조직사업에 집중했다. 지역생협이 각자 운영하고 있던 매장을 모두 없애

4 1998년 제정된 생협법은 2010년 2월 26일 국회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생협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범위의 확대', '공제사업 가능',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생협에 대한 지원 명시',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5 장종익, 「유럽주요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2. 프랑스 소비자협동조합의 쇠퇴의 이유로 조직의 관료화, 혁신에 대한 배제, 자본 제공자로서 조합원의 역할에 대한 개발 노력 미흡을 들고 있다.

고, 조합원 가정으로 직접 물품을 배달하는 가정공급에 집중하였다. 또한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생협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과 이사회를 활동에 결합하고 있는 조합원 활동가로 바꾸는 노력을 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2006년까지 시기는 아이쿱생협이 조합 활동의 주인이 될 조합원 조직(활동)에 집중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물류집중을 통한 사업 효율화와 조합비 제도, 전국물류망의 구축 등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뒤따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초기 경영난을 극복했다. 조합원 조직의 성장을 밑바탕으로 2007년부터 아이쿱생협은 프랜차이즈 매장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생협들은 조합원 활동 중심의 기존 사업 방식에서 새롭게 매장경영이라는 도전을 시작하였다. 조직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장도 모한 시기였고, 이러한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지역에서 만든 매장들은 조합원이 자본을 조성하고 조합원 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운영 초기 자본조성과 경험 미숙으로 지역생협 리더들의 고생이 많았지만, 경제사업 조직인 생협이 가져야 할 경영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 간의 매장경영은 아이쿱생협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2012년 아이쿱생협은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 중심으로 순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성장의 결과물이 유실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려면 조합원 조직이 질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듯 협동조합에서 사업과 활동은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으면서 원활하게 순환해야 한다.

2. 협동조합조합 생태계를 준비하는 아이쿱생협의 활동 방향

1) 조합원에 대한 아이쿱생협의 관점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⁶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의 구성원들이 바라는 공통의 목적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다.⁷ 2009년에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실시한 <조합원 의식과 실태조사> 결과는 생협의 사업과 운동이 추상적이고 거창한 이념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이쿱생협은 이 구체적인 조합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과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구현해 가고 있다. 동시에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가 사회적 제도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농업과 급식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핵심적 특징은 바로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른 상품을 공급하고, 그 조합원이 자신이 요구한 상품을 소비한다. 이때 조합원이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만 존재한다면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단순히 조합원의 규모가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하는 조합원의 규모가 협동조합 성패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주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조합원의 비율을 얼마나 늘려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미래는 달라진다.

하지만 조합원은 저절로 주인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신의 선택으로 조합에 가입하지만 출발은 단순한 소비자일 뿐이다. 생협 상품을 이용해보니 질도 좋고, 가격도 맘에 들어서 이래저래 생활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생협에서 개최한 어떤 강좌, 문화 활동에 참여해보니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도 해주고 재미도 있다. 이 재미가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고 연결되게 한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주류 사회의 기준과 다른 삶을 경험하는 계기를 만나게 된다. 협동조합과 협동의 가치를 서서히 맛보게 된다. 이런 반복

6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ICA성명>, 1995년 영국 맨체스터, ICA 100주년 기념대회.

7 <조합원 의식과 실태조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09,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매장의 경우 90.7%, 인터넷의 경우 92%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이쿱생협에 가입했다고 답변했다. 또 아이쿱생협의 물품을 이용하는 이유를 식품의 안전성, 물품의 품질, 명확한 산지의 순서로 밝히고 있다.

된 경험으로 조합원은 ‘함께 행복한’ 일을 만드는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아이쿱생협이 지닌 협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관점과 가치가 반영된 개념이다. 또한 조합원의 변화와 성장에 따른 생협의 발전을 염두에 둔 계획이자 비전이다.

2) 아이쿱생협의 변화와 성장 속에서 활동의 과제

2012년 12월 말 현재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규모는 170,127명(조합비 조합원 129,850명)이다. 조직의 정체성을 ‘윤리적 소비’로 정리하고, ‘생협운동의 대중화’를 사업전략으로 삼은 10주년 시기(2007년)까지 전체 조합원 규모는 34,291명(조합비 조합원 22,350명)에 불과했다. 사업의 성장은 2007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⁸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과 규모를 갖춘 사업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해 간다. 출자금과 조합비만 납부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갖추어진 아이쿱생협은 2012년 한 해만 조합원 20,097명이 늘었다. 하지만 그 수만큼 협동조합의 주인도 늘어난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총회나 마을모임 같은 조합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도 80.2%⁹에 달한다. 총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조합의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업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조합이 경우도 전체 조직이 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출 향상이나 조합원 성장에 그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이쿱생협은 지난 16년 간의 노력으로 이룬 사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로는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한다. 왕성하고 열정적인 운동으로 사업적 토대를 만들어온 것이 지난 시간이었다면, 2007년 이후 괄목할 만한 사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운동이 활성화되는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 소수의 활동

⁸ 2012년 아이쿱생협의 전체 사업액은 3,449억 원이고, 2007년의 사업액은 942억 원이다.

⁹ 앞의 조사, ‘조합원의 생협조직활동’ 비율.

가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표 1> 아이쿱생협의 현황 : 2000년~2011년

연도	조합원 현황		사업현황		조합수	매장
	출자조합원 (조합비 조합원)	전년대비 증가율	매출액 (원)	전년대비 증가율		
2000	2,470명	100%	53억	81%	15	-
2001	3,330명	35%	83억	56%	26	-
2002	7,538명	26%	165억	99%	35	-
2003	11,645명	54%	287억	74%	46	-
2004	15,368명	32%	494억	72%	58	-
2005	16,808명	9%	601억	22%	62	-
2006	20,097명	19%	760억	26%	62	6
2007	34,291명 (22,350명)	70% (11%)	942억	24%	65	25
2008	54,660명 (35,204명)	58% (59%)	1,301억	38%	70	38
2009	78,593명 (56,100명)	59% (44%)	2,062억	58%	73	66
2010	118,824명 (85,166명)	51% (51%)	2,632억 (2,405억)	28%	77	90
2011	155,705명 (109,753명)	31% (29%)	3,002억	25%	75	110
2007 대비 현 증가상황	121,414명 (87,403명)	354% (391%)	2,060억	219%	10증가	85증가

3) 조합원 참여를 만드는 정책과 시스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쉽고 다양한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바탕으로 ‘조합비 제도’를 시행한 것처럼, 아이 굵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실천해왔다.

(1) 가격안정기금

2010년부터 조성한 가격안정기금¹⁰은 2011년 배추파동 시기에는 조합원과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2년은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어려움을 예측하면서 가격안정기금 조성액을 높였다.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꾀하여 조합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총 19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사용 금액은 총 23억4,552만4,557원이다. 1차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3% 증가한 금액을 투입하여 가격을 안정시켰다.

<표 2> 2012 수매선수금 현황

조성처	조성금액 (원)	투입 물품군	투입금액 (원)	비고
지역생협	462,199,189	청과	1,028,406,971	1차
활동연합회	132,056,911	양곡	611,007,760	
생산자	1,308,296,077	축산	153,344,576	
총 계	1,902,552,177	수산	3,454,670	가공류
		떡류	134,665,580	
		두부류	414,645,000	
		계	2,345,524,557	

¹⁰ 1차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서 조합원과 생산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조합비와 가공생산자의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매월 적립하여 재원으로 사용한다.

(2) 수매선수금과 수매자금

2011년 5월에 시작하여 2012년 자리 잡고 있는 ‘수매선수금’ 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¹¹ 시행한 지 1년 반의 짧은 시기이지만 2012년 전체 조합비 조합원의 약 9.8%(조합비조합원 기준 대비)인 12,664명이 참여하였다.¹² 2012년 선수금은 매월 16~25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생산자들에게 봄에는 영농자금으로 가을에는 수매자금으로 활용되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을 위한 선급금으로 지불되어 영농자금 지원 역할도 했다.

이밖에 라면공장 주식 참여나 클러스터 기금 등 협동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 조성에 조합원이 쉽게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자본 참여운동이나 제도에 대한 참여는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품 가격에 기금을 붙여서 협력과 연대활동을 펼치는 공정무역 기금이나 씨앗재단이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와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도 확대되고 있다.¹³

(3) 새로운 활동 과제

2012년 전국 지역조합과 연합조직이 개최한 교육 횟수는 8,142회이고 참가한 연인원은 76,102명이었다. 2011년의 2,398회 연인원 32,756명에 비교하면 놀라울만한 실천이다. 교육과 훈련, 홍보를 제 5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에서도 모범이 되는 성과이다. 하지만 이 수치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짚어보게 된다. 이 숫자가 소비자에 머무르고 있는 80% 이상의 조합원을 포함해 가고 있는지, 소수 활동가만의 활동이 아니라 조합원의 활동이 어떤 모습과

11 수매선수금이란 소비자들이 이용할 물품대금을 미리 내어서 영농자금이나 생산을 위한 선급금으로 생산자를 지원하고 가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생산의 기반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12 2012년 수매선수금 목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조합비 조합원의 15%였음. 총 14,623명이 참가 신청을 하여 3,592,940,000원을 조성함.(2013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대표자회의 자료집)

13 씨앗재단의 기금 조성 참여자는 2011년 664명에서 2012년 839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 총액도 14,220,000원에서 80,085,500원으로 늘었다.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 활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활동 방향을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하는지 등의 과제에 대해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수는 약 3,173명¹⁴으로 현재 조합원 수 대비 2.4%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활동이 소수 활동가만의 활동으로 안주하여 조합원과 유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80% 이상의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지 길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적 성과를 가지고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조합원 개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쉽고 효과적으로 알게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아이쿱생협의 활동 방향과 조직 체계 정비는 이런 실천의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3. 아이쿱의 활동방향과 협동조합 생태계

1)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가?

식품안전이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생협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삶에서 생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2009년의 경우 조합원이 바라는 다른 사업¹⁵은 육아협동조합이나 대안 교육 정도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으며, 생협 조합원의 삶에서 생협이 그다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합원 개인의 삶에서 생협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 생태계라고 한다면 한국처럼 사회적 복지제도와 시스템이 취약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사회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언론에 소개된 기사¹⁶처럼 ‘미그로 키즈’ ‘코프 키즈’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협동

14 「2013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대표자회의 자료집」, <표 10>, 2013년, 63쪽.

15 앞의 조사 ‘아이쿱생협에서 실천해보기를 바라는 협동조합’에 대한 대답으로 대안학교(49.3%), 육아협동조합(53.0%), 사회적기업(41.4%) 순서로 답하였다.

16 ‘대이는 ‘코프 키즈’ 스위스 국민 대다수가 협동조합원’, <한겨레>, 2012년 6월 7일.

조합이 운영하는 기업의 직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스위스인의 모습은 협동조합 역사가 오랜 먼 나라들이나 유럽의 풍경에 불과한 것일까? 유럽과 달리 소비자생협의 규모나 사업이 아직은 미미한 한국 사회에서 조합원에게 생협의 필요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 협동조합 생태계를 준비하는 아이쿱활동

협동조합 생태계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복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의지가 있고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동 속에서 교육과 훈련,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협동의 방식으로 서로의 삶을 고양할 조건을 함께 만든다. 그것은 개인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움과 즐거움을 주는 방법도 있고, 생협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업훈련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식품안전의 문제를 단지 물품의 이용을 넘어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시민들의 식품안전 수준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소박한 워커즈의 시도를 통하여 육아,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협력과 협동의 메커니즘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여 일상의 복지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2013년 '신나게 참여하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품격 있게 향유하는 조합원 참여'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활발한 조합원 참여를 만들려 한다. 더 다채로운 활동 내용과 공간이 생긴다면 참여에 소극적인 80% 조합원들도 생협이 벌이는 다양한 활동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다.

(1) '협동의 집' 구상

아이쿱생협의 전국 지역조합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조합원 모임 공간을 가지고 있다. 매장은 물론이며 카페, 요리실, 교육장, 동아리실, 북카페 등도 있다. 또 전국 지역 중 몇 곳(해남, 남원, 대전, 상주 등)은 생협센터가 세워져 조합원과 만남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매장과 카페를 기본으로 공연장, 회의실, 교육 공간, 게스트 하우스 등이 있고, 의료생협이 함께 있는 곳도 있다. 특히 2013년 많은 지역조합들은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협동조합이 만나서 즐기고 배우면서 나누는 협동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공간은 가칭 ‘협동의 집’이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또 다른 가능성을 실현하는 곳으로 나타날 것이다.

(2) 문화를 통해 배우는 협동

상상력을 펼쳐내는 다채로운 활동 내용이 있어야 공간이 더 풍요로워진다. 놀면서 배우고 실천할 ‘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의 향유와 축제, 인문학을 통한 세상 만나기를 함께 연결시킨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합창, 악기 연주, 연극 등 시민들이 자신의 문화적인 요구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화예술 한마당, 나눔 토크콘서트, 인문학 소모임 카페 운영, 릴레이 독서운동과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 만들고 누린다. 기타 동아리에 가입해서 기타를 배우는 것은 조합원 개인의 취미생활이지만 이 과정이 바로 협동을 생활 속에서 익히는 시간이 되는 방식이다. 계몽적이거나 진지한 방식의 교육이나 강좌를 선호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선택할 활동거리가 많아지므로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3) 한국 사회 삶의 문제에 대안 제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조합원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자본기업의 극단적인 경쟁과 이윤추구, 취약한 복지제도로 한국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각박한 사회이다.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 9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1위의 자살률 등, 최근의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한국 사회는 삶의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1) 협동조합의 가치로 이룬 사업의 성공 필요

아이쿱생협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영역인 식품, 의료, 교육, 주택, 노후문제 등에서 해당 주체들과 연대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¹⁷ 이런 사업들의 성공적인 운영은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을 돕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생산자와 직원의 삶도 지킨다. 공정무역은 국경을 넘는 윤리적 거래로 아동노동 금지에 대한 연대와 제3세계 생산자의 근로조건과 삶을 개선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협동조합의 가치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상품과 일정 수준의 사업규모를 달성하는 사업적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동시에 조합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운동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더욱 힘을 얻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농지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 유지, 생활정치운동과 협동조합의 법률적 조건과 세제 개선과 같은 제도개선운동을 통해 협동조합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제반 영역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다 만들기도 어렵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연대가 필요하다. 협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주체들이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협동하고 연대한다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대안은 많아질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만든 품질 좋은 의류를 소비자협동조합에서 판매하고, 주택협동조합이 건설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교육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생활은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는 건실한 협동조

17 쿠리모토 아키라, “협동조합은 ‘생활 속의 협동’을 담당할 수 있을까?”, 『생활 속의 협동』, 2009년. 세계협동조합들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동의 모범적인 사례 참고.

합이 많아져야 가능하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여 정책 수행 의지가 있는 행정이나 비영리조직, 민간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4. 마치며

생협이 제공하는 확대된 사업영역에서 개인의 삶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윤리적 소비를 하면서 조합원의 삶은 윤택해진다. 더불어 활동에 참여해 보니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 이 재미와 즐거움은 협동과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심어준다. 조합원 의식은 건강한 질문과 참여를 만든다. 참여의 경험이 쌓이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진정한 주인으로 변화한다.

이 과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하게 한다. 개인으로서 고립된 삶이 아닌 '함께'라는 경험이 주는 맛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협동은 특정한 이념을 공유한 사람들만의 연대인 부담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단지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이익집단도 아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다.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요구와 필요는 경제적인 것부터 정치적인 것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 다양한 요구가 자신들의 참여와 협동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런 참여를 통하여 주인의 역할을 하는 조합원이 많아지면 협동조합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풀어 가는데 힘이 된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조합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합원의 참여를 만들어 내는 힘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 (아이쿱생협 쿠파서비스 경영이사)

가정의 기초는 공동체와 연대이다. 좋은 가정에는 특권이나 무시, 편애, 의붓 자식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깔 보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이를 희생시켜 이득을 얻어 내고자 하지 않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강탈하지도 않는다. 좋은 가정에서는 평등, 배려, 협동, 지지가 넘쳐난다. 이를 ‘위대한 국민과 시민의 집’에 적용하자면, 특권층과 박탈당한 사람들,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빼앗는 자와 빼앗긴 자로 구분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사회는 지금까지는 시민에게 좋은 집이 아니었다. 만약 계급 격차를 없애려고 한다면 사회적 돌봄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이 경제운영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삶에 받아들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¹

1. 복지 생태계와 닮은 협동조합 생태계

국민에게 집(not house but home)은 가족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그 누구보다도 포근히 챙겨주는 공간을 의미한다. 한손 총리(사민당)는 “교육도 시키고 아프면 병원에도 보내고,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의 집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1928년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치 공약으로 내걸어 4년 후인 1932년에는 집권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44년간, 1976년까지 스웨덴 사민당은 연속 집권을 통해 그들이 제시했던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달리 표현하면 ‘복지 생태계’를

¹ ‘국민의 집’-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르 알빈 한손의 1928년 의회연설문.

꿈꾸고 국민과 함께 실현한 것이다. 스웨덴 사민당 정부가 구축했던 복지 생태계는 1990년 경제위기를 맞아 위태로운 듯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 지금도 안정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국민의 집’으로 기능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이 세계 1위인 덴마크는 여성 취업률이 80%에 육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성의 높은 취업률은 육아와 교육, 노인 돌봄 등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복지정책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 사회를 보면 가장 취약한 복지 분야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빈곤문제이다. 가장 열심히 일했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70%가 현재 빈곤하거나 앞으로 빈곤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준비하는 것 외에 사회적인 노후 보장이 없다. 덴마크에서는 빈곤한 노인은 없다고 스스로 말한다. 2011년에 필자가 덴마크 헬싱외르의 ‘햄릿’이란 노인여가시설에서 만난 65세의 올센 할머니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으므로 모든 것을 국가가 해 준다”고 자랑했다.

덴마크에서는 노인들에게 100~15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집이 없는 노인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준다.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이다. 이런 복지정책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유럽의 금융 위기에도 휘둘리지 않고 복지국가 덴마크와 스웨덴을 지키고 있다. 인구 500여 만 명의 작은 북유럽 나라 덴마크가 유럽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조건 없이 56억 유로를 우선 출연하겠다고 선언하여 주변의 강대국을 놀라게 하였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북유럽 변방의 가난한 나라였다. 긴 겨울과 빙하에 의한 침식으로 인한 거친 농토 등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생산력이 낮은 나라였다. 스웨덴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150여 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던 빈곤한 나라였다.² 이런 나라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탈바꿈 한 것이다.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그것도 ‘고른 풍요’를 일군 것이다. 오늘날 복지국가 스웨덴의 시민들은 “대학은 있으나 대학 등록금이 없다.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임금에 격차가 없고, 비정규직이 있으나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다. 회사가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어도 걱정이 없고, 세입자가 많지만 전월세 걱정이 없다.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보육걱정, 교육걱정이 없다. 은퇴 후 노후걱정이 없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교육, 의료, 주거를 사회가 제공하므로 개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복지 생태계와 닮아 있다. 협동조합에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면 주거, 돌봄,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협동조합 생태계의 목표가 아닐까?

2. 복지 생태계의 원동력, 협동조합

그러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스웨덴 사민당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낸 성과가 바로 복지 생태계일 것이다. 정당 하나가 44년 간 선거를 통해 연속 집권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실현된 20세기에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복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었던 정치적 리더십과 시민 참여,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다. 여기에 기여한 것은 협동조합운동과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이 지배하는 사상과 문화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민당과 노동조합, 협동조합이 씨줄 날줄로 얽혀 거미줄처럼 다양한 어소시에이션과 얽혀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1860년대부터 농촌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열악한 자연환경 때문에 척박한 농토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생산력을 높일

² 김형미, “김형미의 비영리 협동경제”, 『진보정치』, 2012. 5. 15.

수 없었다. 이들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경제적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농민들은 낙농, 축산 등의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조합, 저축조합 등을 조직했다. 1920년 말 덴마크를 방문했던 조선 YMCA시찰단의 보고³에 따르면 1929년 당시 덴마크의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 1,853조합, 낙농 및 축산 등 농업협동조합 9,197조합, 신용 262조합, 보험 1,100조합, 농촌저축조합 528조합이 있고 1명의 농민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5~6개의 조합에 가입해 있었다. 당시 덴마크의 인구는 343만 명에 불과했지만 수많은 농업분야 협동조합이 주요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개인의 이기적인 속성을 제어하고, 협동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신념을 만들어 낸다. 협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이 뿌리내려야 한다. 덴마크의 고등공민학교(folkehøjskole)를 비롯한 교육 운동은 협동을 강화하고 성공시킨 사상적, 문화적 기반이 되었다. 이런 노력은 1900년 초에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고급 계란 시장을 덴마크의 계란농업 협동조합이 완전 석권하는 성과를 낳는다. 덴마크의 협동조합은 이미 110년 전에 생산자 원산지 증명제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생산 분야의 혁신을 일으켰다.

현재 덴마크는 농업국가가 아니며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덴마크 시민들은 협동조합과 교육 운동을 통해 협동 노동과 협동 경제, 인간에 대한 신뢰,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배우고, 이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지금과 같은 높은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복지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덴마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인데 그 수준은 48.9%로 한국의 20.2%(OECD 평균 28.2%, 2009년 기준)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2010년 덴마크 총선에서 세금을 더 내서 복지제도를 유지 개선하자는 사민당이 감세를 주장한 자유당을 제치고 집권하였다.

³ 김형미,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을 찾아서”,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41~48쪽.

복지 생태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스웨덴생협연합회(KF)는 2003년 ‘식료품 공급 목표 달성’을 선언하였다. 1899년 창립 이후 줄곧 생협이 실현해야 할 목표로 제시했던 ‘부족한 식료 공급’, ‘자본의 독점에 대항’하는 역할이 달성되었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지금은 환경과 건강 그리고 문화적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스톡홀름 도심에 동물원을 만들고 해마다 최고의 뮤지컬 가수, 배우들이 출연하는 크리스마스 쇼(15,000명 참석), 2011년에는 패밀리 데이(18,000명 참석) 개최와 같은 문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설탕과 지방을 줄인 어린이 식품 개발, 환경운동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이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스웨덴 생협은 공정무역소비 운동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공정무역품을 일반 슈퍼마켓, 열차의 식당차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보급되어 있으니 따로 공정무역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하기

한국 사회에서 당장 꿈꿀 수 없는 이런 사회적 제도를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 협동을 통해서 이런 사회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실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협동조합 생태계’ 논의의 출발이다.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복지 국가는 국가 시스템이 하나의 생태계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이 복지 국가와 같은 생태계를 실현하고 있는 모델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하 몬드라곤 그룹)을 들 수 있다.

몬드라곤 그룹은 스페인 바스크 자치주 몬드라곤이란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가 부임한 1942년, 인구 8천 명이었던 몬드라곤은 현재 3만 명이 넘는 인구에 첨단 산업에서 유통 분야까지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큰 공업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중심도시이다. 몬드라곤 그룹은 경

영 위기에도 자체 임금삭감이나 다른 협동조합과 인력 이동을 통해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했다. 이는 스페인의 경제위기 속에서 빛난 가장 큰 미덕으로 회자된다. 몬드라곤은 지역개발,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 사회보전을 위한 공헌, 빈곤극복 등, 레이들로 박사가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에서 제시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⁴

몬드라곤은 MCC(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라는 정식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다.(현재는 ‘몬드라곤협동조합 그룹’이라 부름) ‘복합체’라는 명칭은 공업, 금융, 유통, 지식정보 4개 부문이 250여 곳의 협동조합과 자회사로 얽힌 유기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유기체 안에서 일하는 84,000명의 노동자와 주민에게는 그들의 삶을 지키고 문화를 만들어주는 ‘협동조합 생태계’를 의미한다.

몬드라곤 그룹은 생태계의 관점에서 두 가지고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협동조합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지원 구조의 역할, 다음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협동조합 복지시스템이다.

1) 협동조합의 장점을 최적화한 몬드라곤 그룹

이를 위해 몬드라곤 그룹은 일관된 ‘소(小)경제제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단위 협동조합의 기초조직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원조직을 만들었다. 지원조직은 부문과 전체가 상호의존하면서 부문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협동조합 그룹의 장점은 규모가 큰 협동조합을 연결하면서 선진적인 기술을 겸비한 협동조합을 내부로 포괄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몬드라곤은 집단화(밀도가 높은 협동조합 간 협동), 소경제 제도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노동금고와 이켈란 등의 기술 개발 연구소, 몬드라곤 대학 등의 인적 자원 육성기구가 몬드라곤 그룹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다.

4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요임 ‘연리지’ 번역, “모든 것은 ‘학습’에서 시작되었다”, 『몬드라곤협동조합 입문』, 일본농협중앙회 발행.

전체 실업률 20%, 청년층 실업 50%가 넘는 어려운 스페인의 경제 상황에서 몬드라곤 그룹은 폐업위기의 협동조합에 대한 재건과 구제를 그룹 경영 차원에서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한다. 노동금고를 통해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고, 잉여 노동자를 타 조직으로 재배치시키는 라군-아로와 같은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의 성장이다.

파산, 감원 등 실업위기에 놓인 협동조합의 노동자에게 다른 협동조합으로 전직 등을 통해 안정된 고용 보장을 유지하는 힘은 몬드라곤 그룹의 협동조합 생태계에서 나온다. 보험협동조합인 라군-아로의 공제 분야에는 3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일시휴업수당, 고용조정수당, 의료수당 등을 받는다. 일반 보험 분야에는 37만 명이 가입해 있다. 공업클러스터만이 아니라 농업분야의 에르코업그룹과 에로스키그룹은 급식, 돌봄, 청소, 의료, 보건개호 등 사회적서비스와 슈퍼마켓, 주유소, 여행 레저, 스포츠센터, 미용, 문구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몬드라곤 대학과 같은 교육협동조합은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비조합원 임금노동자를 포괄하는 유기적인 생태계

그렇다면 몬드라곤 그룹의 비조합원인 임금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들에게도 생태계가 적용되는가? 몬드라곤 에로스키그룹에서 일하는 노동자 45,000명 중 15,000명만이 조합원이고 나머지는 협동조합의 자회사나 새로 인수한 회사의 임금노동자이다. 이들을 위해 몬드라곤그룹은 에로스키그룹 50%, 임금 노동자 50%를 출자하여 헤스파(GESPA)라는 출자회사를 만들었다. 이 출자회사의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합원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기업들도 몬드라곤 그룹이라는 협동조합 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생태계란 일하는 노동자 조합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권력을 민주화하기 위해 지식을 사회화할 것”을 주창한 호세 마리아 신부는 교육이 몬드라곤 그룹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통

잘했다. 몬드라곤은 ‘협동조합교육’, ‘전문기술교육’ 그리고 ‘몬드라곤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이런 노력의 성과로 몬드라곤 그룹의 경영진 중에는 900명에 이르는 노동자 출신 경영인들이 그룹 내 사업체들을 경영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가능한 결과이다.

3) 모든 삶의 필요가 충족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한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협동조합 생태계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필자가 2012년 방문했던 캐나다 퀘벡 주의 몽마니 시는 퀘벡 시티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11,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이 도시는 캐나다협동조합연합회의 상을 받을 만큼 인정받은 협동조합 도시다. 몽마니시의 협동조합은 데잘댕 협동조합은행 몽마니지부, IGA COOP(소비자협동조합), UNIMAT(LA COOP 농협연합회 회원조합-건축자재, 공구 등 생활용품 소비조합), LA COOP 몽마니(지역 농협), 캠핑협동조합(자동차 캠핑장),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 Sonic이 있다. 시민들은 금융 거래는 데잘댕에서, 식료품 구입은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집을 짓고 고치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는 UNIMAT에서, 난방연료는 Sonic 주유소에서, 휴식 등 레저생활은 캠핑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이용한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시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모습의 협동조합 생태계이다. 몽마니 시의 IGA COOP은 조합원 5,576명으로 주민 대부분이 조합원이다. 1962년 주민 100명이 출자(가입출자금 100캐나다 달러, 약 12만 원)하여 만든 이 소비자협동조합은 연매출 400억 원, 직원 150명으로 이 도시의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다. 이 작은 도시의 주민에게 기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외국자본이 60% 넘는 KB국민은행도, SK주유소도, 영리 사기업인 E마트도 아닌, 자본과 노동이 모두 지역에 밀착한 협동조합이다.

4.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의 역사

협동조합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1800년대 초반부터 싹트고 있었다. 영국의 사회개혁가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였던 로버트 오웬은 뉴 라나크(New Lanark)의 방적공장을 ‘협동조합 마을’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뉴 라나크 방적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약 3천 명에게 박애주의적 노동 조건과 노동시설 그리고 노동자 교육을 실시하고 당시에는 획기적인 1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아동노동을 제한하고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했다. 오웬의 뉴 라나크 실험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없거나 덜하면 노동자의 생활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착한 자본이 노동자의 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뉴 라나크에 소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각종 생활필수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일반상인들보다 20%나 저렴하게 공급하여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수익금 중 상당액을 교육비로 충당하는 등 성공을 통해 ‘협동조합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로버트 오웬은 1820년대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던 시기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방안으로 ‘협동조합 마을’을 구상하고 착취의 자본주의를 건너뛰어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오웬은 영국에서 10시간 노동제 도입과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된 사람으로 전해진다.⁵ 이런 점에서 오웬은 협동조합으로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개혁하려는 ‘협동조합의 생태계’의 사상가이자 실천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생협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역시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해 ‘협동조합 국가’를 만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저서 『우애의 경제학』에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형제애 원리에 기반하여 남을 희생시키지도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도 않는 협동조합이 산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은 지역과 부문별 연합조직(연맹)

5 G.D.H. 콜 지음, 김철수 옮김,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 책세상, 2012.

을 만들어 지역의 산업 발전과 노동계급 생활상태를 개선해야 하며, 시민 전체의 일반적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을 통해 산업의 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개인기업을 건강보험, 생산자협동조합, 판매 및 운송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공제협동조합,(교육, 직업, 사회복지 등) 공익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등 7개 분야 협동조합으로 재편할 때 자본주의 착취체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넘어 이종 협동조합 간 동맹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다. 비록 가가와의 바람처럼 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지만, 일본 협동조합 운동은 소비자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5.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조건

협동조합생태계가 어떤 모습일지, 협동조합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아이쿱생협이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운동은 성과를 부문별로 분산시키지 말고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체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받는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협동조합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쿱생협이 말하는 협동조합 생태계는 북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은 역할을 협동조합에 기대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협동조합 생태계는 안정된 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몬드라곤 그룹은 처음부터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용창출, 지역사회와 연대한 복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미 1960년대 초에 몬드라곤에는 노동자조합원을 위한 병원이 건립되었다.

둘째, 협동조합 생태계는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협동조합의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은 필수적이다. 몬드라곤과 아이쿱생협의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은 모두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협동조합 간 협동,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사업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노동과 생활,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이쿱생협의 구레 유기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과 농업 그리고 귀촌과 문화생활이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승자독식,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나눔과 배려가 실종되고 경쟁만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협동을 손사래 치는 사회, 경쟁만이 미덕인 나라에서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만만찮은 과제에 아이쿱생협은 도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대로 협동하는 관계도 만들어야 한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협동조합 생태계는 먼 이상이 아니라 교육하고 협동하고, 구성원들의 기술과 사회적 역량을 높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호세마리아 신부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인간은 협동조합주의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협동조합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숙과 사회 생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동이 가능한 협동조합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협동이라는 원칙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따라서 교육과 선행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은 협동조합주의자가 될 수 있다.”⁶

6 윌리엄T 화이트·캐서린R 화이트 지음, 김성오 옮김,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역사비평사, 2012.

참고자료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가가와 도요히코 지음, 홍순명 옮김, 『우애의 경제학』, 그물코, 2009.

G.D.H.콜 지음, 김철수 옮김,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 책세상, 2012.

윌리엄E 화이트. 캐서린R 화이트 지음, 김성오 옮김,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역사비평사, 2012.

오향식,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견학 보고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모임 ‘연리지’ 번역, “모든 것은 ‘학습’에서 시작되었다”, 「몬드라곤협동조합 입문」, 일본농협중앙회 발행.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2011년 북유럽 협동조합연수 보고서」, 2012.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이사코스 자료집」. [icoop](#)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때/곳: 2013년 2월 4일(화)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회의실

참석: 김동준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송주희 (이웃문화협동조합 추진위원장)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전 성미산마을극장 대표,)

이대중 (한중일 삼국 협력사무국 정무팀장, 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팀장)

장은성 (그물고 출판사 대표)

조우석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사회/정리: 손범규(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사회: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협동조합 생태계입니다.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말이 곧잘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들의 상당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좌담회에서는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협동조합 생태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형 협동조합 생태계 모델을 고민해보자

조우석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이하 조우석): 자연환경 생태계에는 동물과 식물들의 군집이 있고, 또 그 군집들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햇빛, 물, 공기와 같은 외적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 생태계로 생각해 보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시민사회, 법과 제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이하 유창복):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조직들의 시장 중심적 경제활동 생태계와는 달리, 협동조합 생태계는

관계 중심적 경제활동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정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생활적인 필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의 생활적인 필요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생활의 필요를 조달하고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자원을 조달하는 ‘출자’ 과정과, 그렇게 해서 기업적인 구조가 성립된 후 이를 ‘운영’하는 과정, 이것은 협동조합의 고용을 의미하는데 ‘마을 고용’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끝으로 출자에 참여했던 사람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이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출자-운영-이용’이 일정한 관계 속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점과, 관계를 전제로 한 생활적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관계망이 바로 생태계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서로 다른 관계망으로 또 확장될 때에 생태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중 (한중일 삼국 협력사무국 정무팀장, 이하 이대중):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에 가도 막상 생태계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등 어디를 가든지 협동조합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저 결과론적으로 보니, 이미 서로 돕는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들은 길게는 150~180년 정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도와주려는 의식도 깔려있고,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태계라는 목표를 가시적으로 설정하고,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사정에 맞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즉, 한국형 협동조합 생태계 모델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사회: 지금부터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한국형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정부, 민간, 연구자,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역할부터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송주희 (이웃문화협동조합 추진위원장, 이하 송주희):
'이웃'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정부의 역할은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지원 방식과, 사회적 기업을 등록했을 때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원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 협동조합이 가진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로 창업했다가 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화하는 과정인데 "빨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결론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주희 (이웃문화협동조합 추진위원장)

유창복: 아쉬운 사람 우물을 파야 그 우물을 지키죠.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당사자주의적인 원칙이 조직적으로 잘 구현된 경제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기업가와 소비자가 양분됩니다. 기업가가 특출한 사업 아이템과 수익모델을 가지고 소비자를 조직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고, 성공 안하면 망하는 건데 어디 성공이 쉽냐고요.(웃음) 거기다 공익적 목적까지 달성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건데, 그게 힘드니깐 억지로 버티라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랏돈이라는 것을 자꾸 받아먹기 시작하면은 독이 됩니다. 이에 비하면 협동조합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원을 조달하고, 또 서로 참여하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직접 지원 자체가 원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로 따로 살아가기 바쁜 대도시에서 ‘같이 하자’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좇기란 어렵습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고, 당사자주의 원칙 아래 땅을 판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기업의 경우 원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거나, 가볍게 수다 떠는 비용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식 지원을 합니다. 그 중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간 지원을 합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지원의 철학과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전 성미산마을극장 대표.)





김동준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이하 김동준):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에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좋거나 나쁜, 혹은 잘하거나 못하는 여러 협동조합들도 생깁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생태계는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 생태계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간접지원, 특히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벤처기업들이나 최근 사회적 기업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직접지원제도가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서로 경쟁하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직 이론에서는 생태계의 '정당성'이 높아질 때 그 개체 수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각종 자원이 집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협동조합이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영리 조직이나 협동조합 모두 유사한 형태의 메커니즘이 작용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때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논리'가 만들어져서 공감대가 확대됐을 때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이 때 정부의 역할은 원칙적으로는 간접지원을 하면서 혹시 직접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모범적인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얼마나 많은 '성공사례'들이 만들어지느냐가 협동조합 생태계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더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논리’ 면에서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관심을 받고 대안 조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연대와 협동, 참여, 민주와 같은 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들이 조직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강점으로 드러날 수 있을 때에 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정책을 편다면 정말 그런 관점에서 대안 논리들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우석: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재평가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직접지원이 사회적 기업을 많이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직접지원 이외의 인프라 구축에 과연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해보면 그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사회적 경제라는 방식으로 사회 생태계 전체를 변화 시킬만한 철학과 의지가 있었느냐”는 물음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인건비 지원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성장 지원책을 낸 적도 없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사회에 신뢰를 보냈느냐,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만들고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평가해보는다면 그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하지 않고 정부의 직접 지원이 생태계를 망쳤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당연히 협동조합들에 대해 직접지원을 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못해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결국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펼쳐야 하는 것인가는 그 사회가 지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근거한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대중: 협동조합기본법을 준비하면서 민간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부는 법 만든 다음부터는 손을 떼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2012년 3월, 아태지역협동조합장관회의에서 폴린 그린 회장의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연설문들 중에 정부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서는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다른 경제 주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차별하지 않도록 마련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준비하면서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짜 협동조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둘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가짜가 오히려 진짜 같고, 가짜의 서류를 보면 훨씬 더 잘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가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 지원 대상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100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 실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와 같습니다. 직접 지원의 이점도 있지만, 지원해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정부의 간접지원 방침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 인가요?

이대중: 지난 1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흥



이대중 (한중일 삼국 협력사무국 정무팀장)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끼리 연대와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간의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들, 예컨대 복지부에서 하는 복지 관련 사업 및 자활사업,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인턴사업, 농림부의 귀농관련사업 중에 협동조합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기본 지원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의 역할은?

사회: 지금까지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주희: 사실 신생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협동조합을 해 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디자이너 3명이 창립한 이탈리아의 키친코프는 레가 코프라는 대규모 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실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협동조합 생태계 안에 들어갔을 때, 초식동물들이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간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존 협동조합들이 신생협동조합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복: 이미 만들어진 협동조합들끼리 협동하는 방식도 있지만, 성미산마을의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생협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동네에서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이 깨끗한 먹을거리를 먹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두 개, 방과후교실이 하나였는데 그 셋을 다 합해야 고작 87가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자해서 생협을 만들었습니다. 생협은 만들었

는데 막상 반찬을 만드는 게 귀찮아 이용하지 않게 되자, 아쉬운 주민이 제안하여 반찬가게를 열었습니다. 반찬가게를 만든 사람들은 생협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가게를 만들고 나니 생협 입장에서는 단골이 생긴 겁니다. 주간 단위로 식자재를 한꺼번에 사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풀뿌리 생태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들의 내부거래망이 정말 중요한 생태계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공유된 관계망 안에서 계속 새로운 욕구와 생활의 필요들이 발굴되면서 새로운 마을기업(협동조합)이 파생되어 나갑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템의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생협 조합원도 확장됩니다. 반찬이라는 서비스를 보고 온 사람들이 생협을 알게 되어 생협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자자와 소비자 즉, 조합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흐름인 것입니다. 풀꽃들이 혼자 서있지만 땅바닥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듯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협동조합 연대를 발생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줄에 날줄이 얽히듯이 말입니다.

장은성 (그물코 출판사, 이하 장은성): 참고로 홍성의 흥동지역 같은 경우는 별 생각 없이 “뭐 하고 싶을 때 같이 뭉쳐서 하자”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동네인데, 오히려 협동조합기본법 때문에 작년에 뜬금없이 엄청나게 많은 포럼이 열렸습니다.(웃음) 우리는 법이 통과된 것도 모르고 있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가입해야된다”, “협동조합협의체 만들어야 된다”며 막상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요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협동조합방식으로 해왔는데, 거기에 어떤 타이틀이 걸리고, 어디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쓸모없는 생각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원 없이도 잘 해왔습니다.

사회: 유창복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미산 마을의 경우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먹을거리)생협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

적으로 들어가,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기존 생협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창복: 공동육아라고 하는 특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모인 조그마한 관계망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결망이 바로 생협입니다. 그 당시 지역사회는 육아보다는 먹을거리가 훨씬 대중적인 필요였습니다. 또 이미 한살림이라는 성공모델이 있었고, 공동육아로 훈련된 주민 관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아이쿱, 한살림, 두레생협 등이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작은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잔가지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협을 보면 그냥 물류망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지 물류망으로서의 생협이 아니라 생활의 관계망으로서의 생협과 균형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생활의 관계망은 규모의 효율이 아니고 호혜의 관계, 호혜의 밀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존의 생협들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여성들의 수다망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구조가 생협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석: 큰 생협의 경우에는 지역의 말이 노릇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네트워크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를 조직해서 지역 내 의료생협을 만든다거나 공동육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기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우석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의 협동조합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동준: 기존의 생협들이 지역 내에서 생활의 각 필요와 관련된 협동조합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식품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협동의 생태계, 관계 중심적 생태계를 만드는 모체로서의 역할을 사업과 운동의 중심으로 놓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됨과 더불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사회: 성미산 마을과는 달리, 홍동지역에 협동조합 생태계가 잘 조성된 데에는 ‘풀무학교’라는 교육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생태계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실현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장은성: 풀무학교가 1958년에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통해 신협이나 교직원생협을 만들어서 일정정도 수준이 지나면 지역으로 내보내고, 다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흡수되는 식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 의식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체화가 되었습니다. 풀무학교는 문을 열 때부터 지역사회와 같이 간다는 큰 그림이 있



장은성 (그물코 출판사 대표)

었습니다. 그것을 말 뿐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의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들이 풀무학교에서 시작해서 지역으로 나온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동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연대, 협동, 참여, 민주 등의 협동조합 가치를 실현해 내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부 생협이나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협동조합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협동조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나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MBA 스쿨에는 사회적 기업가 과정뿐만 아니라 비영리경영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늘려야 합니다. 연구조사 및 정책 제안, 인큐베이팅, 임원실무자 및 조합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 및 일종의 협력센터를 지역마다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대중: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교육이고, 또 앞서 정부의 역할들 중의 하나도 교육입니다. 앞서 논의됐듯이, 기존 협동조합이 어떻게 다른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들을 도와줘야 하는지도 결국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잘되는 해외 사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몬드라곤에 가면 몬드라곤 대학이 있고, 볼로냐에는 볼로냐 대학이 있고, 트렌토, 퀘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국에 가서보니 협동조합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 정부지원을 안 받는데도 그 과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수강을 하면 학점도 인정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하려면 어떻게 생존과 협동을 해야 되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이 깨지는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장사는 잘되는데, 번 돈을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다 나눠 갖자, 누구는 다 출자하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서 깨지곤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사회: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자의 역할 및 육성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송주희: 협동조합과 관련한 강연 및 토론 자리에 다니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고 교육을 했음에도, 토론장에 오신 분들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과, 연구자들이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 사이의 괴리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괴리감을 좁히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이 생겨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찾아가보면 대부분 똑같은 강사들입니다. 실제 현장의 고민을 풀 수 있는 맞춤형 연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문화협동조합의 경우 이 분야에 전문화된 연구자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대중: 다른 정책과 산업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관련 연구가 많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가르친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으며, 체계적인 재원을 한 번도 투입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까지 협동조합 관련해서 유일하게 진행한 연구 용역이 국회사무처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주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민간 측에서 정부의 간접지원 방식의 하나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는 정책적인 연구 용역들과 관련 교육비가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광역에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 다양한 연구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여러 협동조합들도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역할은?

사회: 마지막으로 민간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우석: 협동조합 생태계 내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시민사회에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처럼 노동계와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합니다. 실무자와 협동조합을 창업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성공모델을 육성하는 일이 현재 중간지원 조직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창복: 행정의 탑-다운 관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자원 배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주도의 행정은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은 칸막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별로 따로 계획 세우고 각개 약진합니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마을은 경제, 문화, 사회, 복지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고 주민들보고 참여하라는 식입니다. 정책에 소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행정은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은 1년의 호흡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면서 정부의 자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 주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서울시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모식으로 뿌린 후 가시적 성과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및 컨설

팅을 통하여 주민들의 나서기를 지원하고, 당사자주의가 지켜지는 자원배분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왜 필요한가?

사회: 지금까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시장에서도 모든 필요들이 충족 가능한데, 도대체 협동조합 생태계를 왜 조성해야 하는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번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조우석: “지금 이 사회와 세계가 자본주의 성공으로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협동조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네트워크들이 퇴보하거나 노후화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치 중심의 네트워크나, 새마을운동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가 이제 그 기운을 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지역 안에서 해나가는 것이 협동조합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중: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내에서 협동조합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은, 협동조합은 정부와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업이 잘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도 이미 현실적으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았을 때 협동조합의 필요성

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을 왜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성미산 마을의 공동육아처럼 협동조합에는 ‘공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장과 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도 갈수록 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나 동아리 모임이 아닌 공식 영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장은성: 협동조합을 왜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재밌으니까 합니다.(웃음) 뭐 제가 깊이 개입한 협동조합 마을 카페 ‘뜰’의 경우에도 언제 문을 닫아야 제일 아름다울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웃음)

송주희: 협동조합은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사실 편익보다 불편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즐거워요. 그게 매력인데, 재밌지 않으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원하는 일들은 실제 마을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험이니까 재밌어서 계속 해보게 됩니다. 이건 협동조합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식회사 원리였다면 분명히 마을에 있을 수 없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번 돈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들과도 소통하는 부분이 계속 생깁니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사실도 차츰 알아갑니다. 그러다보니 여유도 생기구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을 계속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유창복: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좀 더 보충해보자면, 시장에 맘에 드는 쓸 만한 게 있긴 한데 돈이 없어서 그림의 떡이고, 국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있어도 별로거나 내 차례가 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결국은 아쉬운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즐겁습니다. 즐거워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해보자”고 마음먹게 됩니다.

김동준: 결국 우리가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상실했던 가치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공동체와 재미로 표현하신 것처럼, 이런 상실된 가치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다는 대중적 열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신뢰의 구조에서 나오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생협들의 성공요인도 따지고 보면 결국 정보비대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협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신뢰구조를 나름대로 형성한 것입니다. 결국 신뢰나 사회적 자본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영리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강점입니다.

사회: 오늘 협동조합 생태계의 정의부터,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주체들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coop**



손범규(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협동조합 이슈

- 이슈 ▪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박기용 (한겨레 사회부)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법적 근거를 개별법에 의존해 왔던 국내 협동조합들이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맞았다. 법이 발효되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다. 올 1월말 현재 각 시도에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해 수리된 건수는 221건을 기록했다. 신청건수는 319건에 달한다. 수리 건수 기준으로 서울(50건), 광주(50건), 부산(19건), 전남(17건), 경기(1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광주에선 지난 1월 15일까지만 해도 신청건수가 11건에 불과했지만, 보름 사이 64건으로 늘면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 부처에서 인가를 받게 돼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4개가 인가됐다. 신청건수는 29개에 이른다.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8,000~1만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4~5만 명의 협동조합 취업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협동조합들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 있다. 대리운전자나 퀵서비스기사,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노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공인들이 뭉친 협동조합들이다. 또 기존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도 눈에 띈다.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도시농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협동조합도 생겨났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기존에 개별법에 근거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는 편의성 덕에 상조, 의료소비, 자동차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뭉쳤다

가장 눈에 띄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협동조합들이다.

서울시 1호로 신고를 한 대리운전협동조합은 과도한 콜수수료와 부당한 벌금, 보험료 횡령 등 업계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하며 대리운전기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다.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한 달 벌이에,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체는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인터넷카페에 모여 업체 쪽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단체 설립을 고민하다 협동조합으로 방향을 잡았다.

1인당 조합비 60만 원에 100여 명이 모여 시작했고,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를 뒀다. 교육위에선 대리운전에 필요한 지리정보, 교통사고 발생 때의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권익위원회에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합원을 지원하고 콜센터 등과 처우개선 협상을 벌인다. 이들은 3월에 아예 자체 콜센터를 세워 운영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은 이미 5년 전부터 법외단체인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해오다 기본법 제정 뒤 정식 법인격을 인정받은 협동조합이다. 5년 전 5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70명까지 조합원이 늘었다. 일반 퀵회사에선 퀵기사들에게 수수료를 23%나 떼고 있지만 이들은 15%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협동조합 홍보를 하면 5%를 돌려주게 돼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는 10%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 10%를 조합비와 운영비로 충당한다. 하지만 수익이 적다보니 중간에 그만두는 조합원도 생기고 사무실도 여러 번 옮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본법 제정으로 정식 법인격을 갖춘 만큼 기업 대상 영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포부다.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협동조합들도 속속 문을 열었다. 지구촌 협동조합은 서울 구로지역 이주노동자 80명이 4천여 만 원의 출자금으로 스

스로를 위한 식당과 인력중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다. 단돈 천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인력중개소에서선 직업교육과 인력파견 사업을 펼친다. 어린이집과 공용화장실도 마련했다. 조합장인 김해성 목사는 '지구촌'을 시작으로 주택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까지 이주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을 확대해 갈 생각이다.

다문화·노인·농민·전통 상인들도 결성

전국 곳곳에서 설립되고 있는 다문화협동조합은 다문화 가정 이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자조모임이 모태가 됐다. 베트남·필리핀·중국·일본 등에서 부인을 맞은 충남 금산군의 남편 14명이 지난해 12월 자본금 천만 원을 모아 만든 금산군 다문화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아버지 봉사대를 만들고 텃밭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올해는 깻잎 농사와 인삼 가공 유통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 곳곳의 '처갓집'들을 유통 거점으로 삼아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을 팔고, 수익이 나면 다문화 가정의 낯은 농가를 고쳐짓는 등 조합원 복지에 쓸 생각이다.

광주의 더불어락협동조합과 마중물협동조합 등은 청소나 텃밭주이 등을 하는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광주의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광산노인복지회관 회원들인 60살 이상 노인 20명이 1,500만 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광산노인복지관에 공정무역 커피를 파는 북카페 '더불어락'을 운영하고, 월곡시장에 팔죽가게 '밥상마실'과 두부가게 '두부마을'을 개점했다.

마중물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김형준 동장이 제안해 폐지를 돕는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전직 통장과 고철 수집상, 노인회장, 주부 등 평범한 동네 주민 1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105명의 주민들에게 2천 원부터 2백만 원까지 출자 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동네에 폐지 돕는 노인 15명을 조합원으로 모셨고 이들도 2천 원씩 출자했다. 인근 교

회와 통장, 조합원, 이웃 주민들에게 현옷 3천 여 벌을 기증받아 쓸 만한 옷을 천 원씩에 판매하는 일로 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조합은 한 달 수익금 100만 원 중 30%를 적립한 뒤 조합원으로 가입한 폐지 줍는 노인 15명에게 수당 5만원과 10kg짜리 쌀 한 포대씩을 전달한다. 마중물협동조합은 동네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공생의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농업분야에서 생산과 유통을 맡는 협동조합도 속속 등장했다. 신흥 협동조합 조직이 기존 농·수·축협 조직과 경쟁을 벌일 만큼 성장한다면, 농협이 독점하다시피 한 지역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변화가 기대된다. 전통시장과 농민들의 협동조합은 강원도 지역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강원도에선 정선 아리랑시장협동조합, 봉평메밀협동조합 등이 속속 설립됐다. 전라북도 1호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완주한우협동조합도 지역 농가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뭉친 사례다.

그동안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왔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 아리랑시장은 지난 1월 24일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시장의 상인회 원 200여 명이 전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정선아리랑시장협동조합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채류 등 지역의 농·특산물을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동 구매한다. 좋은 품질의 산채류와 농산물 판매를 위해 협동조합 자체인증 절차를 마련해 품질 관리도 한다. 지역 특산물인 곤드레나물을 활용해 삼각김밥도 만들었다. 도·소매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삼각김밥 생산 공장도 마련했다.

전북 완주의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완주의 한우 생산농가 50명이 뭉쳐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소비자와의 직거래 유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내년엔 완주군이 조성한 고산 문화관광형 테마장터에 직접 운영하는 한우 판매장을 내고 한우특화식당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시중보다 가격을 20~3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에선 대형할인점과 대기업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맞서기 위해 동네슈퍼 같은 작은 가게들이 모여 만든 골

목가계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공동 구매와 개별 가게에 특화된 물류시스템을 도입해 원가 절감 등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베이커리협동조합, 이미용협동조합 등과 협업체 대기업의 유통업 독식구조를 개선하겠다고며 버리고 있다. 최근엔 부산은행과 제휴카드 발행 협약을 맺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구두 제조업체의 40%가량이 밀집해 수제화 산업의 ‘메카’로 평가받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는 수제화협동조합이 들어섰다.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은 수제화업체와 피혁 등 부자재 수입업체 대표와 디자이너,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만들었다. 불황으로 최근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업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조합에 참여한 업체들 간에 기술력과 노하우를 나눠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등 판로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두 장인의 기술력과 거품을 뺀 가격 등이 이들이 내세우는 강점이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협동조합도 곳곳에서 들어섰다. 서울 성북구에서 설립된 성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의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공동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서 설립된 행복나눔협동조합은 식당과 유통업 종사자들이 전국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기 위해 만들었다. 조합원 사업장에서 필요한 식자재와 유기농물품을 공동 구매한다. 건강 식단 도시락을 개발해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 등에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소셜 프랜차이즈’도 설립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빌딩에 문을 연 커피전문점 카페 오아시아(Café Oasia)는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9개의 소규모 카페가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올해 조합 카페를 50개까지 늘리고 카페 오아시아 브랜드의 가맹점 10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사장인 정선희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스

타백스, 커피빈처럼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다문화·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밀착형·도시농업·햇빛발전 등 새로운 유형도

5명만 모이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립 편의성’ 덕에 여러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통수공예나 북카페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협동조합이 눈에 띈다. 지역주민들이 만든 일종의 ‘마을 협동조합’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주민센터에 들어선 한지랑칠보랑협동조합은 10년 전 동네 주부 8명이 동 자치센터 문화교양강좌에서 한지공예 수업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한지공예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강사 자격도 따고 전시회도 열다가 칠보공예반 회원들까지 합세해 마을기업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협동조합으로 바꿨다.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주민들이 만든 마을기업북카페협동조합은 수락산 아래 자리잡은 노원골 사람들이 만든 책다방 ‘마을’이 모태다. 이들은 ‘노원골 사람들’이란 이름의 마을공동체에서 출발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통통’을 운영하는 이들은 학부모 40가구를 주축으로 지난해 5월 북 카페 ‘마을’을 열었다. 노원골 사람들을 위한 휴식공간에서 시작한 북 카페는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와 유기농 차를 팔고 수익이 나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농업, 햇빛발전, 도시재생,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들도 대거 설립됐다. 대학교 교정의 빈 땅에 텃밭을 일구며 도시농업을 해 온 대학생 모임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연합 동아리 성격이었던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인 ‘레알텃밭학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 협동조합’도 도시농업 협동조합이다.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

민들과 수직농장 재배기술 협력업체의 경영진 등 30여 명이 생산자이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엘이디(LED) 조명과 온도·습도 조절 시스템을 갖춘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의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햇빛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협동조합들도 여럿 설립됐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서울시내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지붕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시민 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을 하는 등 도시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한 협동조합도 설립됐다. 마을건축협동조합은 서울 금천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인다. 주택·건물 등의 유지보수 관리, 에너지 효율화, 홈클리닝,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마을건축협동조합은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 과정 2기 수료생들이 주축이 됐다. 올 상반기부터 지역 단독주택지의 노후상태와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에서 시작된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인 만큼 금천구에서도 마을건축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관련한 협동조합도 설립됐다. 국악나루협동조합은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문화협동조합을 표방한다.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에 전념하고 시민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해 예술활동을 배우거나 즐기면 된다. 일상적인 마을축제 등에 참여해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컨설팅, 한국오픈컨설팅협동조합, 협동조합부산연구소, 부산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창업지원협동조합 등은 협동조합과 관련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한다.

기본법 설립으로 개별법에 근거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상조와 관련한 거품을 빼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조합 내에 상포계를 뒤 조합원들을 위한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장례용품을 공동으로 구매한다. 장례사업이 안정되면 혼인잔치계 사업도 구상 중이다. 예식장 이외의 옥내외 공간을 확보해 결혼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여유 있는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쪽방촌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고독사’하는 노인들의 상을 마을장례로 치르는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상조 관련 협동조합은 한겨레두레 말고도 상조협동조합, 한국장례의전협동조합 등이 설립됐다.

소상공인이나 농민 등이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사업자형 협동조합도 잇따라 설립됐다. 서울자전거협동조합은 자전거 부품과 완제품을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주차협동조합은 주차정보 실태 조사, 주차장 주요설비인 폐회로텔레비전(CCTV) 공동구매,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울이사업협동조합은 이사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일감도 공동광고로 함께 수주해 나눈다. 조합 업체들이 보유한 화물차량에 대한 손해보험 체결 때 조합원인 업체들이 함께 체결해 원가도 절감한다.

협동조합은 배당이나 이윤 추구가 아닌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조합 자체가 지속가능한 수준의 이윤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사회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윤을 남겨 지속해가면서도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역할도 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1.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대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협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경쟁 지상주의, 승자독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무한 경쟁이 불러온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활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는 것을 보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이다. 이런 협동조합들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UN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여 기념하고 세계에 협동조합에 대하여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 통과 후 1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이 속속 조직되어 불과 한 달 만에 전국에서 1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 중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한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그동안 업체가 물리던 지나친 콜수수료, 부당한 벌과금, 보험료를 떠넘기기 등의 횡포를 배제하려고 나섰다. 퀵서비스 노동자들, 간병인들, 학습지 교사, 이주노동자들, 시장상인들, 골목 빵집주인들도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모색도 있다. 5인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사업체를 운영하여 중간착취를 배제하려고 한다. 협동조합이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협동조합운동에 커다란 진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법은 기존 8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제13조 1항),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다(제45조 3항)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은행은 물론이고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도 신규 설립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우리 금융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이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정부가 통폐합을 통하여 규모를 키워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금융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조직된 협동조합이 발전하는데 금융지원은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이는 협동조합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예고하는 것이다.

2.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수단

우리 사회는 그동안 영·미식의 무한경쟁에서 이겨 승리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이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처럼 오직 일등을 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해온 것이다. 재벌들은 이미 쌓아놓은 부를 바탕으로 담합에 의한 독점가격의 유지, 재벌 오너 일가에게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들의 기술 갈취,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나아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 등을 통하여 더욱 부를 키워가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시장은 점차 비정규직화 되고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져 간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으므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고, 담합에 의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의 확대와 함께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대회에서 발표한 ‘협동조합의 정체성 성명’의 기초를 작성했던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의 이안 맥퍼슨 명예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죠. 놀랍게도 미국의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식재료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 정부가 일반 기업에 주는 혜택을 협동조합에도 공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

미국의 버거킹(Burger King)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저렴하게 식재료를 조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편의점 사업주들도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이윤에만 급급해 가맹점주들을 쥐어짜는 현재의 시스템 대신, 상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 편의점 모델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본사에 내는 가맹수수료는 매출이익금의 35%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고, 야간에 적자가 나도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며, 장사를 그만두려면 위약금을 내어야 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결과 본사는 해마다 수백억 원씩 이익을 내지만 2만 명 넘는 편의점주들은 기초생계비를 벌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제 편의점주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불평등한 관계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²

문제는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발전하여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협동조합의 생태계는 잘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

1 한겨레신문, 2013. 2. 15.

2 한겨레신문, 2013. 2. 19.

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금융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생태계의 중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자본은 취약하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하면서 출자금을 찾아갈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뀌더라도 일단 납입된 자본의 안정성은 보장된다. 반면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채로 취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하는 협동조합들은 여러 가지가 취약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영 노하우도 취약하고, 회계, 시장개척, 자금 등이 모두 취약한데, 생존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협동조합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가장 왕성한 지역의 하나인 스페인 몬드라곤의 협동조합들이 건강하게 발전한 데에는 '노동인민금고'라는 협동조합은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인민금고는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데 기여했으며, 기존 협동조합에도 제때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여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몬드라곤의 창시자인 호세 마리아 신부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하여 신탁이나 협동조합은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인민금고를 창설하였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 수 없으며, 은행들은 협동조합에 대출을 꺼리고, 또한 은행에 빚을 지면 독립성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 노동인민금고는 새로운 협동조합

³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75쪽.

기업을 만들려는 경영자의 자질과 그 설립 그룹의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이 경영자에게 18~24개월간의 임금을 선 지급하여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약 3년 간의 손실을 분담하고, 차후에 이익에서 이를 변제받는다.⁴ 이렇게 새로운 협동조합 기업의 설립을 노동인민금고가 사실상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인민금고는 기존 협동조합들과의 상담 및 긴급지원 등을 담당하여 왔다. 1980년대 전반에 불황이 당했을 때 노동인민금고는 몬드라곤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었다.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어 불황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파산 위험이 높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확대하여 회생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들 기업의 ‘수호천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⁵

이제 노동인민금고는 크게 발전하여 스페인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충하여 2010년 현재 420개의 지점을 두고, 100개국의 1,200개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⁶ 몬드라곤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몬드라곤의 경험은 협동조합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몬드라곤 뿐만 아니라 구미의 협동조합 선진국들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행한 것이다.

4. 우리나라 협동조합 금융의 현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구미와는 다른 발전경로를 걷고 있다. 이미 금융협동조합들이 수십 년 동안 성장한 후에 일반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

4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102~104쪽.

5 몬드라곤의 기적 67쪽.

6 몬드라곤의 기적 69쪽.

라서 금융협동조합이 새롭게 생기는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면 가장 좋은 환경이 될 것이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들이다.⁷

오랜 역사의 단절을 겪은 후 60년대 초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신협은 70년대 초까지 자주와 독립을 지키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에 반해 금고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관 주도성이 좀 더 강했다. 신협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운동이 70년대 중반부터 권위주의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으면서 자주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그 관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조합원 자치가 약해진 신협과 금고의 부실이 드러나 공적자금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욱 강한 통제를 받으며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신협이나 금고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주와 독립, 조합원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규모 키우기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작은 조합들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변신을 꾀하는 데 열심이다.

새로운 신협이나 금고의 출현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는커녕, 이들 금융협동조합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것에 반대하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협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 규제를 풀게 되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발전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금융협동조합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어 자치를 강화하고 조합원 참여를 통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7 농수협의 중앙회나 시·도 지부들은 일반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5.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을 책임지게 하라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참여와 자기 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이미 협동조합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협동조합이 스스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고, 나아가 다른 협동조합을 도와서 건강한 협동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기본법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협동조합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들 협동조합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방법은,

첫째, 금융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탁이나 금고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탁이나 금고가 협동조합임을 분명히 하여 종합금융그룹에 대한 꿈을 접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히 정보를 공개하며, 경영 평가에 이런 실적들을 반영하고 경영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다른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신탁이나 금고의 설립을 장려하여야 한다. 금융업의 특성상 그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하지만 새로운 신탁과 금고의 설립을 장려하여 이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들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들을 지원해야 한다. 당장 금융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 정책'을 답습하면 안 된다. 미소금융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정부가 조성하는 사회투자기금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경영한 사람들에게 운영 책임을 맡겨야 한다. 금융협동조합이 정상화 된 이후에는 이들과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금융협동조합을 발전시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신탁법과 금고법을 통합한 금융협동조합법을 만들어 금융계의 협동조합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다른 법률로 나뉘어서 발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통합된 법을 통하여 기존 신탁과 금고가 발전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금융협동조합이 생겨나서 자유롭게 발전할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6.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오랜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협동조합도 단절과 파행적 발전의 역사를 겪었다. 이제야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강자들의 횡포를 물리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 금융협동조합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여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새롭게 조성된 협동조합 붐을 잘 살려서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경제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icoop**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전 일이다. 2011년 경기도와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서울 지역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조례’의 역사상 특정 조례가 이토록 많은 논란에 부딪혔던 적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논란을 빚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또 그것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논란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여지가 별로 없다.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오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의도적인 곡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근본 취지와 그 정당성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고, 그동안 제기되어온 부적절한 논란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 10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굳이 이러한 헌법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제한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이를테면 범죄자, 재소자, 군인, 학생 등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는 생각이 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의무복무니까’, ‘아직 미숙한 학생이니까’ 인권의 보장이 유보된다는 식이다. 실제로 그들이 있는 현장(교도소, 군대, 학교)은 특별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물론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일부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재소자나 군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엄연히 권리의 주체이다. 불가피하게 그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충분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

이 중 ‘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특별하다. 왜냐하면 범죄자나 군인과는 달리 ‘학생’은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경험해야 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시절에 형성된 인식체계가 평생토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시절의 경험은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학생시절에 인권을 쉽게 훼손하거나 훼손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무뎠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라는 화두가 제기된 배경도 그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기존의 헌법적 권리를 재확인 한 것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법의 형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대단히 특별한 무엇인가를 창조해낸 것은 아니다. 이미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법률에 보장

되어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지역적 수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이다. 다만 기존의 상위규범들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학생은 인권문제에서 예외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생’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인권규범을 만든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교장, 교직원, 보호자에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목록들을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라는 규정이 있고, 법률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은 당연히 학생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를 학생 수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쉽게 말해, 학생인권조례는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담겨 있는 내용에서 주어를 학생으로 바꾸고 학교 현장에 맞는 구체성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체벌금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것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체벌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단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이론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1조 제8항) 한마디로 우리 법은 이미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1항)는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접체벌(이러바, ‘기합’을 주는 것)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직접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즉, 체벌금지는 학생인권조례가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법령이 금지한 것을 학생인권조례로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2012년 1월이었고,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2011년 3월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둔다. 체벌의 부활을 원하는 시위대가 교육청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애꿎은 학생인권조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을 개정한 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 항의하는 것이 맞다. 교육청이나 시의회에 앞에서 아무리 항의를 해봐야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그래도 그들은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체벌금지의 사례만 봐도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부당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지 명확하지만, 문제는 체벌금지 뿐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도 받는다. 일단 임신과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새롭게 창출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불법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놓았다. 주어를 ‘학생’으로 바꿔 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시위를 벌이는 분들은 국회에 가서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 교육청이나 시의회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는 초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차별금지조항이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차별금지는 말 그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엇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동성애는 조장한다고 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존재하는 동성애 지향의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할 뿐이다. 학생의 임신이 바람직하다고 교육하자는 뜻도 아니다. 만약 임신한 학생이 있다면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동성애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임신한 학생들을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법률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무도 담겨 있어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무조건 우위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다.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교교육에 협력해야 하고, 정당하게 제정된 학교규범을 존중해야 할 책무도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서울 학생인권조례 제4조 5항, 6항) 즉,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

면서도 정당한 교육적 목적에 따라 그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었다. 이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예컨대,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 바꿔 말해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상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내용을 학생 소지품 검사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러한 조항 하나하나에 시비가 걸린 이유는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학생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얘기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을 들먹이는 학생 때문에 교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떤 학생이 복도에서 뛰어 다니고 있는데, 교사가 그 학생에게 복도에서 뛰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저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복도에서 뛰어다닐 권리’가 있는데요?”라고 대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일부 언론의 전언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들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선차적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지, 학생인권이 무제약적 권리라고 규정한 것이 전혀 아니다. 만약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행위가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뛰어다닐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무조건 뛰지 마”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체벌 등으로 제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뛰어다니는 것은 저의 자유인데요?”라고 물었다면,

교사는 그것이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다른 교사·학생의 안전)와 조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되, 인권과 인권이 서로 상충할 때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권교육’의 핵심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방종을 부추겼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오독된 것일 뿐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교현장에 무사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실행과정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례의 실행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정부가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례의 시행 자체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교체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혼선을 극복하려면 일단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얘기한대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부정하거나 학교현장을 교란시키고자 한 것이 전혀 아니다. 국제인권규범과 우리 헌정질서가 인정하는 학생인권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제가 있다면 조례가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조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행’이 문제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서울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두발제한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중·고교의 88%가 두발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서울교육청 학생참여단의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 학생의 60%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도 못하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이 시급하다

결국 문제의 해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서 정착시키는 것에 있다. 혹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있었다면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행과정에서 조례의 행간의 의미가 충분히 숙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그 취지를 이해하고 학교현장에 정착시켜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학생인권조례 자체에는 조례가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조건들까지 규정되어 있다. 학생인권종합기본계획 수립,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인권교육·홍보 실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들이 구비될 때 학생인권조례가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적 내용이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체벌을 통한 지도에 비해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지도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면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하고, 교사의 잡무가 많아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잡무를 덜어줘야 한다.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그 지원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학생인권의 실현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놓고 격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국제사회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명한 규범적 내용까지 부정하거나 조례가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억지로 가정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조례 제정에 반대하거나 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맞다. icoop

아이쿱 생협만평

이동수



물의 공공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릴 적에는 마당 펌프에서 길어 올린 물이 신기했고 은색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염소냄새 나는 물을 거리낌 없이 마셨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한 기술로 정확되는 수돗물인데도 직접 마시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도 정수기가 있는 풍경이 발전이고 밖에 나갈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물을 사먹는 게 자연스럽다. 수돗물이 미심쩍다며 시간을 내서라도 더 좋다는 약수터의 물을 공수해 오는 일도 흔히 보는 풍경이 되었다. 예전에는 고급스럽고 깨끗해서 마음껏 마시던 수돗물의 이미지는 어느새 정수기와 생수에 밀려나 먹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다른 용도의 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물은 생명이다’라는 공익광고를 보면서도 현실에서는 과자나 음료수처럼 쉽게 사서 먹고, 좋은 질의 물이 필요할 때는 돈을 더 주고 사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 정수기는 점점 고급화 되면서 TV나 냉장고처럼 유행 따라 바꾸는 가전제품이 되었다.(그림 1)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원 수준,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고 100여 개 브랜드가 제조 판매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그림 2)¹ 요즘 학생들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대신 ‘페리에(Perrier)’를 주문해 마신다. 과시용으로 마시기 시작했던 생수가 요즘에는 점점 더 건강과 웰빙을 위한 기호품이 된 것이다. 케이블 TV나 신문에서만 볼 수 있던 생수 광고는 규제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지상파 방송에도 등장할 예정이다. 물도 경쟁적인 돈벌이 대상이 된 것이고 이태리 생수광고²는 여느 영화 광고 못지않게 선정적이다.(그림 3)

1 머니투데이, 2012. 12월 12일자.

2 <http://blog.naver.com/boraviolet84/30093363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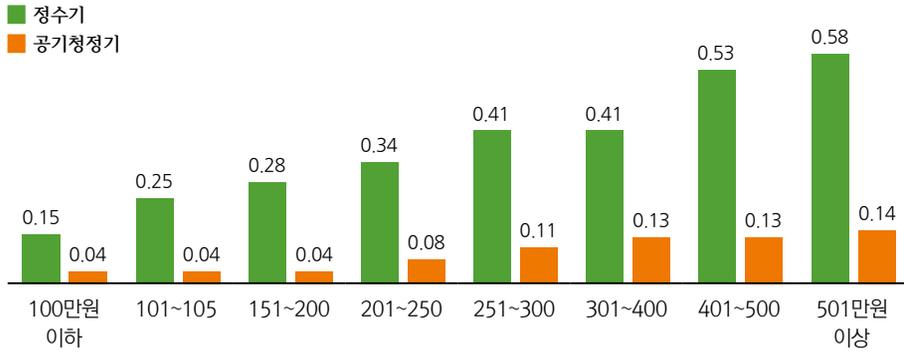


그림 1. 소득계층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 (대가구)



그림 2. 생수국내시장 규모



그림 3. 이태리 Mattoni Spring water 광고



그림 4. 생수전문 워터바

<표 1> 시중 생수 가격 차

상품명	마하로 해양심층수	슬레 아르떼	휘슬러	미네마인
제품				
용량(L)	1.5	0.33	1.5	2.0
가격(원)	5,980	4,900	3,490	730
(원/100ml)	398.7	1,484.8	232.7	36.5

실제로 한 병에 2만 원까지 하는 비싼 생수³가 수입되고 Water Bar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생수를 알코올이나 차처럼 주문해 마신다 해도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표 1>, 그림 4) 요즘 휘발유 값이 1,000ml에 전국 평균 1,972 원, 서울 지역은 2,076원쯤이니 1ml에 2원 정도의 단가이다. 이 가격이 비싸다고 유류세를 낮춰 달라 요구하고 알뜰 주유소를 만든다. 어느 주유소가 싸지 알아보는 가격비교 웹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같은 가격으로 물 값이 매겨진다면 500ml 생수 값은 1,000원인데, 일반 시민들은 물 구입에 이 가격을 쓰는 데 별 주저가 없다. 돈 주고 물을 사는 일이 일상이 되고 좀 더 좋은 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이 점점 공감을 얻고 있다.

물은 이미 공급보다는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 지에 대한 논의가 훨씬 중요해졌고 그 결과 먹는 물의 선택권은 소득과 비례해 양극화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로 끓인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소득이 높으면 정수기와 생수구입 비중이 높아진다.<표 2> 가구소득 외에 13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일수록, 수돗물에서 녹물이나 양금 등을 경험하여 불신이 심할수록 생수/정수기 소비지출이 크다.⁴ 이런 현상은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2> 가구 소득별 주 이용 식수

구분	수돗물	끓인 수돗물	생수	정수기	약수	끓인 물 (수돗물제외)	기타
100만원 미만	0.0	60.9	13.0	26.1	0.0	0.0	0.0
100~200만원 미만	0.7	37.8	20.3	37.1	1.4	2.8	0.0
200~300만원 미만	0.6	30.6	19.6	42.5	3.4	3.1	0.3
300~400만원 미만	0.8	30.0	12.3	49.8	4.9	0.8	1.2
400만 원 이상	0.3	20.0	20.0	54.2	2.0	3.1	0.3

(N=1,031⁵, 단위 : %)

3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한 병에 2만 원인 핀란드 자작나무 수액으로 만들었다는 '버치샵(Birch Sap)'은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한데다 인체 체액과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돼 흡수가 빠르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음.

4 유승훈, 생수 및 정수기 소비지출에 대한 이변량 토빗 연립방정식 분석, 『자원환경 경제연구』, 12(4):559~577쪽, 2003.

5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이용 행태 및 물 가치 의식조사, 2007.

공공 분야에서는 여전히 수돗물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정밀여과, 한외여과,⁶ 나노여과, 역삼투여과를 거치며 염소, 오존, 자외선 등으로 소독까지 다각적인 대안들이 추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 노력에도 수돗물은 저렴한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개인적 선호도, 취향에 따라 맛과 성분이 다르고 고급화된 생수의 공격적 마케팅에 밀려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정책 방향과 달리 공공분야에서도 정수기나 생수 이용이 일반화되었듯이, 이에 대해 둔감한 생활과 문화 방식의 영향이 크다. 정치를 포함한 공공분야에 대한 불신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도 한 몫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물의 상품화, 산업화를 더욱 부추겨 공공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고 개인 주머니도 얇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댐을 만들고 관을 연결해 끌어다 먹는 물은,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마셔온 물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아이들이 마셔야 할 물이다. 지구 전체로 보면 물의 양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물의 순환 과정에서 인간과 동식물이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필수 자원이다. 물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아이들과 그들의 삶에 필요한 다른 생물들에게까지 우리가 누린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양과 질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개념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물 복지 개념의 근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물의 양과 질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 정책의 방향도 복지 개념보다 고급화되고 맞춤형 수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의 화두인 좀 더 나은 사회, 서로에게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는,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고 믿음이 가며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6 고압으로 여과막을 통과시키는 여과법.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걸러짐.

지구나 생태계에서 물이 중요하다는 담론을 말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물이 모든 이에게 골고루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공되는지부터 따져보자. 사람들의 생활에서 살펴보면 놀러가거나 산책할 때 필요한 물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해결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재로서 물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요구를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표 3> 인터넷에서 수집 정리한 물 관련 불편사항

장소	불편사항
해수욕장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시설부족
산책로	손을 씻는 수도가, 식수대 시설부족
등산로, 공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부적합 판정, 음용가능 여부 확인불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음
캠핑장	악취, 고인 웅덩이의 벌레 발생(대부분 캠핑장 등에 오폐수 정화시설 없음)



그림 5. 멜버른의 음수대 이용 모습



그림 6. 맨리 해안가 음수대 공익 광고

물이 부족한 호주의 멜버른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상하수도 기업인 Yarra Valley Water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Choose Tap 프로그램⁷은 건강한 생활방식과 소비적인 생수의 긍정적인 대안의 하나로 수돗물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멜버른의 수돗물을 이용함으로써 매년 생수 소비에 필요한 5백만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음수대에는 버스표지판 같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크게, “DRINKING STATION”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전면에는 환경 관련 문구가 있고, 병에 물을 담기 편하도록 높은 위치에 수도꼭지가 양 옆에 설치되어 있고, 병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직접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Choose Tap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⁸도 개발하여 멜버른 내 1,000여 개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Choose Tap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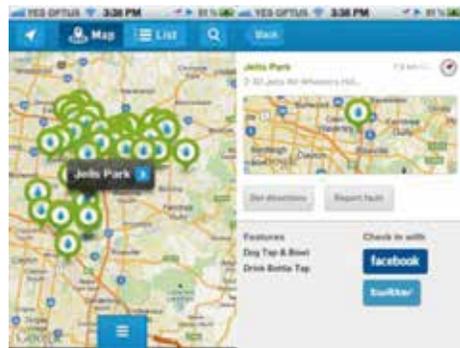


그림 8. APP 활용 모습

Choose Tap APP의 기능

- 인근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 길 찾기 제공
- 애완건을 위한 시설 위치, 병에 물 채울 수 있는 곳, 공공 화장실 표시
- 새로 설치된 지역 공지, Choose Tap의 결함 공지
- SNS를 통해 확인하고 Choose Tap을 알리도록 지원 등

⁷ <http://blog.naver.com/eyrejane/130062044129>

⁸ Yarra Valley Water의 홈페이지(<http://www.yvw.com.au/>)

우리의 물 복지는 학교나 직장에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따로 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며, 산책길에 물병을 챙길 필요가 없는 나라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최소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공원, 놀이터 등에서만이라도 손쉽게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 말이다.

미국은 1초마다 1,000개 넘는 생수 병이 버려진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도시에서도 공공기관, 공원에서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를 다양하게 설치해 두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호텔이나 공공장소의 수도에는 마시기에 충분히 안전하니 마음 놓고 마시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은 물론, 마지못해 마시는 게 아니라 멋지고 신기해서 마셔보고 싶은 음수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안전하니 마시라고 하면서 수요자 입장의 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마시는 물이 부족하지 않고 수질도 높은 수준인 현실에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을 두고 무지의 소치라느니, 선호도가 다른데 생수 마시는 걸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나태한 얘기보다 다양하고 진화된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9. 세계의 다양한 음수대 모습



온천수 분수대 / 독일
<http://fmkorea.net/fm12free/18911731>



어린이 등 약자배려 음수대 / 일본 키타큐슈
<http://heo-jeongdo.tistory.com/m/post/view/id/308>



소화전과 연결된 음수대 / 캐나다 캘거리
<http://www.brokencitylab.org/2012/07/>



놀이기구 모양의 음수대 / 런던 Hyde Park
http://www.supporttheroyalparks.org/explore/in_your_park/where_your_support_goes/



공원의 음수대 / 미국
<http://www.tiffinbarkpark.com/drinking-fountain-w-dog-bowl/>



공원의 음수대2 / 미국 보스턴
www.bikexpert.com



미국 BELSON사 제품
<http://www.belson.com/contact.htm>



장애인 음수대 / 한국 청주중앙공원
<http://artmoonbow.egloos.com/ag/%EC%9D%8C%EC%88%98%EB%8C%80/page/1>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사기업의 생수를 공공기관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안전하다면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행사 때마다 생수를 이용하는 모습은 참으로 모순이다. 외국에서 시행하듯 국민 세금으로 생수를 사지 못하도록 해야 공공에서 주장하는 수돗물 이용 확대 정책의 진정성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 수돗물이 정말 마실 수 있고 안전하다면 공공이 먼저 그 물을 항상 마시고 이용하고 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개인도 정수기 설치나 생수 사먹기 보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더욱 맛나고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싸구려 이미지는 어찌면 생수회사의 조장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⁹ 생수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방송에 대한 방송 기준도 검토가 필요하다. 비싸니까 안전하고 몸에 좋을 거라는 단정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다른 공산품에 비해 매장, 업소마다 천차만별인 생수 값을 의아해하지 않거나 시정해달라고 하지 않는 지나친 관용은 생수업체의 배만 불릴 뿐이다.

먹는 물에서 시작한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물 기본권이 무엇이고 복지적 관점의 물 공급은 무엇인지 서로 배워나가게 될 것이다. 남의 사례를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물을 통해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물을 함께 즐기고 가꾸는 자산이라고 인식해 가는 일에 열정을 가져보자. 머지않아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수돗물을 생수처럼 이용하는 우리를 꿈꿔보는 것도 즐겁지 않은가? 

⁹ 피터 H. 글렉, 환경운동연합 옮김, 「생수, 그 치명적 유혹」, 추수밭, 2011.

숨겨진 법칙을 발견하라!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을 읽고

최은미 (밤말 도서관)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 정부는 2011년에 갑자기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12월부터 기본법을 시행했다. 사회적기업, 거버넌스 등의 이야기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흔한 이야기가 된 것도 한참 전의 일이지만, 특히나 협동조합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그 열기가 매우 뜨겁다. 급기야 서울시장은 서울을 협동조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원리인 협동(협력)은 유행이 되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결사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는 상식이 되었다.

얼마 전 2011년에 나온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정태인 저) 이란 책을 읽어 볼 기회가 생겼다. 나는 처음 이 책을 접하고는 ‘착한 것이 좋다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 그 얘길 다시 확인해야한단 말인가?’ 어쩐지 현시점에서는 한참 뒤쳐진 이야기인 것 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분량이 적고, 평이한 문체로 쓰여 읽기에 참 만만한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장 한장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이 책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를 반대했던 진보경제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전통 경제학의 기본 명제를 뒤집어 볼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사회의 딜레마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 해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협력과 신뢰처럼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 가능한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의 수학적 알고리즘을 제시하듯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명쾌하게 답해준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 경제

잘 알다시피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찾게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인간의 탐욕을 죄악으로 여겼던 18세기 유럽에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다. 실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유일한 본성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기심이 인간 본성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이기심은 주류 경제학의 행동원리로 고착됐다.

그러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난다. 경제학자들도 인정한 이것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하는데, 방송이나 국방, 민주주의와 같은 공공재, 탄소 배출과 같은 외부성, 독과점 등은 자유로운 시장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식량이나 약과 같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다른 무언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을 기본으로 하는 이 시장 논리를 부동의 진리로서 유지해야할까?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저자는 인간이 정말로 이기적이냐고 묻는다.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은 '사회적 딜레마'인데, 집단의 합리성과 개인의 합리성이 서로 다를 때 또는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다를 때 발생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죄수의 딜레마'다. 사교육을 떠올려보면 쉽다. 남들 다 하는 사교육, 내 아이도 당연히 시켜야한다(공포), 또는 상대방이 사교육을 안 시켜도 내 아이만큼은 사교육을 시켜서 성적을 올리겠다(탐욕)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가 협력하건 배반하건 나는 공포나 탐욕으로 무조건 상대를 배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인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공유지의 비극'이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관련된 문제는 잘 풀리지 않는다는 '집단행동의 문제'가 있다.

이런 사회적 딜레마들을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인간이 무조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논리로는 죄수의 딜레마게임, 치킨게임 등 그 어느 것도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있다. 무조건 배반하는 죄수의 딜레마게임을, 협력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만든 사슴사냥게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거꾸로 인간이 이타적이라고 가정해 보기도 한다. 게임은 어떻게 될까? 이기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죄수의 딜레마게임, 치킨게임, 사슴사냥게임 할 것 없이 사회적 딜레마는 모두 해결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하지만 종교적 해법은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타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협력의 조건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협력하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노박(Martin Nowak)은 인간이나 동물이 협력하는 다섯 가지 조건

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첫째가 혈연선택, 둘째 직접상호성, 셋째 간접상호성, 넷째 네트워크 상호성과 다섯째 집단선택이다. 저자는 이 다섯 가지 경우를 죄수의 딜레마게임에 적용해서 실제 어떻게 협력의 조건으로 기능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지속되도록 만들어 사회적 규범으로 형성되면 별도의 법적 강제가 없어도 협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다. 그러나 저자는 협력하고 신뢰하더라도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음을 놓치지 않고 지적한다.

협력의 다섯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추야 비로소 좋은 사회가 되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과,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나라는 지방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도 국가도 아닌 사회적 경제

앞서 이야기 했듯이 시장은 늘 시장의 실패가 따른다. 시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재분배의 역할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복지국가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듯 국가는 관료적 문제와 정보 왜곡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 보통 복지국가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상 국가도 한계가 많아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있듯이 정부 실패라는 개념도 있다. 그렇다면 시장도 국가도 아닌 무엇이 있을까? 바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다. 사회적 경제의 오래되고 중요한 형태가 협동조합인데, 에밀리아 로마나는 이 협동조합이 뿌리 깊은 곳이다. 책의 후반부에는 에밀리아 로마나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데 협동조합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저자는 레가와 CNA와 같은 신뢰의 네트워크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육성한 사회적 기업을 보자.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1인당 80만 원씩 2년 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2년 뒤부터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망하는 기업이 많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저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길게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와는 구분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저자는 사회적 경제를 위해 정치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민주적 원칙을 언급하면서 1원 1표의 경제와 1인 1표의 정치의 권력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한 교육은 경쟁만 가르치는 교육에서 협력의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간단히 정리했지만, 이 책은 살펴본 바와 같이 만만한 책이 아니었다. 저자는 근대사회를 지배해온 전통 경제학에 도전장을 내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만도 이타적인 것만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 좋은 게임을 설계하고, 협력의 조건들을 갖추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적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등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횡포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비영리성, 민주성, 참여와 연대, 자치역량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우리의 경우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경제의 경험이 최근 몇 년에 불과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들은 재정 지원을 받으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낙담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 우리는 저자가 이야기한 경제의 숨겨진 법칙을 이제야 발견했을 뿐이며, 우리가 발견한 그것은 사실 아주 낮설지만은 않은, 인류의 오래된 지혜이기 때문이다. icoop

세계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UN 세계협동조합의 해가 가져온 변화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는 전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하는 곳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공동 로고와 슬로건을 통해 협동조합의 지향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임을 전 세계에 선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협동조합들의 주목할 만한 활동들을 하나의 대표 홈페이지(stories.coop)에 모아 SNS를 통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스토리닷쿱'은 협동조합의 다양성과 영향력의 다채로움을 알려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CA는 이 기세를 몰아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와 영향력에 걸맞은 세계의 주목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글로벌300보고서」를 뛰어넘는 세계협동조합모니터 사업인데 현재 규모 300위까지의 협동조합에 대한 보고와 2,000개 가량의 협동조합 자료를 확대해 5,000개 이상의 기본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성장과 발전에 지표가 될 주요한 정보들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년을 협동조합의 새로운 역사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한 청사진(ICA Blueprint)도 마무리되었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위기 해결 능력을 활용한 협동조합 공동의 비전과 의지를 통해 새로운 협동 경제 체제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확실한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협동조합

ICA 폴린 그린 회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 ILO의 새로운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와 두 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동안 협동조합이 청년 실업을 완화하는데 어떤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한 ILO는 청년 대상의 사업개발훈련프로그램과 협동조합 교육의 접목을 고려하고 있다. 2012년 ILO 국제노동회의의 청년 취업 주제 토론회에는 협동조합의 가능성이 강조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협동조합 청년 조합원들을 독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년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경제 위기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유럽 각국 정부들이 다양한 협동조합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흐름에 힘입어 ILO와 ICA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연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자협동조합 설립과 강화를 위한 공동훈련프로그램 마련에 합의하였다. 특히 ILO 내 기구 CoopAfrica는 국제식량기구 FAO와 국제 NGO들이 함께 개발한 농협훈련프로그램 MY COOP 보급을 통해 농촌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1919년 설립 당시부터 협동조합 촉진을 위해 ICA와 함께 협력해 온 ILO는 협동조합 전문부서인 협동조합국을 1920년에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유럽은행법 개정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는 협동조합 은행들

2012년 12월 13일 EU이사회 합의에 따라 유럽 지역 모든 은행의 감독 기구 일원 법안을 포함한 유럽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은행구제기금, EU예금보증시스템의 단일화가 진행되어 유럽은행연합 탄생이 예상된다. 제 5회 유럽협동조합은행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은행이 직면하게 된 과제를 공유하고 변화된 환경시스템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 자리에 모인 은행, 상호부조 부문의 협동조합 리더들은 개정 법률안이 협동조합의 성과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인 법적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유럽협동조합은행

연합 게르하르트 호프만 부회장은 “협동조합은행은 이러한 법률에서 각주에 위치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다. 협동조합은행이 새로운 법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적된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대규모 은행 사업 규모에 초점을 둔 자본 증가 요구이다. 바젤 III(Basel III¹-은행자본 건전화 방안) 정책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협동조합은행에게, 위험도가 큰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타 은행처럼 자본 증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닐 에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 수석멤버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괄적인 강제 규정에 우려를 표했으며, 아놀드 쿠퍼스 라보은행 기업국 국장은, 일반 대규모 은행 사업 방식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바젤 III 기준에 맞춰 무리하게 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키면 협동조합은행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각 정부와 국가기구들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등한시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므로 협동조합의 장점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홍보가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근래에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협동조합의 위기관리 능력과 지속가능성이 훌륭히 입증된 만큼 협동조합은행의 사례들을 널리 알릴 필요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폴린 그린 회장은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것은 조합원이 의사결정의 중심인 다른 차원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공통의 강점이 있기에 일반 금융기관과 한데 묶인 글로벌브랜드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협동조합은행부문 리더들은 협동조합은행이 ‘예외적’사업 방식이 아닌 은행시스템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koop](#)

¹ 바젤 III: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녹색평론』 128호(2013년 1.2월호)에 박승옥씨가 “한국 생협들은 성장신화를 버리고 결사체운동을 분명하게 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라”는 내용의 ‘한국생협, 성장신화 버려라’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아이쿱생협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아이쿱생협 초대 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아이쿱생협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신철영씨가 반론을 보내왔다.

『생협평론』 편집진에서는 신철영씨의 반론을 게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동조합 진영에서 공식적인 논쟁이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다. 이 반론 글을 통해 생산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로 비공식적인 비난이 아닌 공식 논쟁이 이루어지는 풍토가 협동조합 진영에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협동조합 연구자들의 임무는 비판적이면서도 파괴적이지 않아야 하고, 환상을 깨면서도 희망을 꺾지 않아야 한다. Johnston Birchall(2003)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성장신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승옥은 “성장신화에 포박되어 있다”, “성장신화에 갇혔다”, “성장신화에 중독되었다”(56쪽)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을 뿐, ‘성장신화’가 무엇인지 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성장에 관한 그의 논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인 “협동조합은 당연히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사업체로서 성공하고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성장은 결사체로서의 성장과 사업체로서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지, 자본주의 성장신화에 갇힌 성장지상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 지역사회를 뛰어 넘는 사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 결사체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53쪽, 강조 필자)를 통해서 본다면, 그가 “성장신화에 빠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사체로

서의 협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지역 순환의 경제활동을 약화시키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박승옥은 아이쿱이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는데(즉, 사업체로서의 성장은 합격점인데),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원칙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다. 아이쿱의 성장이 “결사체로서 자립자치의 지역공동체 경제의 구축과 함께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그 구체적인 근거로 “하다 못해 성미산 마을 같은 마을공동체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했고”, “다른 생협 매장의 이웃에 매장을 개설하는 등으로 내부경쟁을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55~56쪽)

우선 아이쿱의 성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통계를 살펴보려 한다. 하나는 현대 협동조합의 효시로 인정받는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하 로치데일)의 통계이고, 다음은 아이쿱의 통계이다.¹ 이 두 통계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다.

<표> 로치데일과 아이쿱의 성장 비교

단위(백)

구분	10년차		14년차	
	로치데일	아이쿱	로치데일	아이쿱
조합원	12.16	54.17	26.35	245.98
매출액	47.01	62.00	105.18	197.51
조합수		10.83		12.50

로치데일의 사업원년인 1845년과 10년째인 1854년, 그리고 14년째인 1858년을 비교하고, 아이쿱의 사업 첫해인 1998년과 10년째인 2007년, 14년째인

¹ 이 두 통계는 지면의 제한으로 이곳에 담지 않는다. 혹시 필요로 하는 독자가 있다면 보내드리겠다.

2011년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² 조합원 수는 아이쿱이 로치데일에 비해 월등하게 성장하였지만, 매출액은 두 조직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이쿱의 성장 비율이 로치데일보다 더 높다고 해도 그것이 질적 차이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로치데일의 성장률 또한 매우 크지만 이 통계를 두고 누구도 로치데일이 “성장신화에 빠졌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로치데일의 구체적인 성장 내용을 살펴보면,³

- ① 초기 주말, 제한시간 영업에서 1851년에는 토드레인매장을 종일, 날마다 영업하고, 매장 안에 신문열람실과 도서실 개설,
- ② 1861년 로치데일선구자 토지건설회사(Rochdale Pioneer Land and Bui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주택협동조합(Co-operative Building Society)을 설립해서 조합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 전개,
- ③ 실업 및 임금 삭감으로 고통 받는 조합원을 고용하기 위한 생산사업 -1850년의 로치데일협동제분소(Rochdale Co-operative Corn Mill)를 설립하고, 1852년까지 주위 22개 조합이 밀가루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협동제분소는 1906년까지 랭카셔 주 전체의 소비자협동조합매장의 밀가루 생산업체로서 자리를 잡고, 1846년에 면직물 및 모직물 직조공장인 로치데일제조조합(Rochdale Manufacturing Society)을 설립,
- ④ 실업 중인 조합원에게 토지와 부동산권리를 임대하여 경작한다는 목표 실현 - 1850년 올담(Oldham) 근교에 Jumbo farm이란 협동조합농장을 건설하고 약 10년간 운영하고, 로치데일공정질병공제조합(Rochdale Equitable Provident Sick and Benefit Society)을 설립, 현재 영국 최대의 협동조합보험조합으로 발전,
- ⑤ 1863년 영국 북서부지역의 협동조합들을 모아 CWS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협동조합도매사업연합회)를 설립함으로써 소비부문이 생

² 아이쿱은 조합비제도를 채택하여 매달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가(원가+약간의 비용)로 공급하므로 시가판매 원칙을 채택하였던 로치데일과 매출이익을 비교할 수는 없어 이익은 비교하지 않았다.

³ 아이쿱생협연합회(2012), 41~42쪽.

산과 유통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하고, 1868년에는 스코틀랜드협동조합도매연합회(SCWS) 설립.

이상의 내용에서 로치데일은 성장에 필요하거나, 조합원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분야로 다양하게 사업을 넓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쿱생협은 …… 물류통합과 매장개설, 조합비제도, 수많은 주식회사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사업이 성장한 만큼, 아이쿱생협 결사체의 성장도 그만큼 달성된 것인지는 의문이다.”(58쪽)라는 박승옥의 지적에는 어떤 기준 제시도 없고, 판단 근거도 없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각 조직이나 사업이 아이쿱의 성장과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혹시 피터 팬(Peter Pan) 증후군?

“아이쿱생협이 성장신화에 빠졌다”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아이쿱은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원칙을 훼손하면서 성장만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빠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이쿱이 성장신화에 빠졌다고 하거나, 어떤 한 사례(구로시민생협의 의견)만으로 이를 증명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협동조합의 의무를 유기했다고 지탄 받을 수 있다. 저명한 협동조합 연구가인 자마니 교수 부부는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터 팬(Peter Pan) 증후군**’⁴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는데, 1977년 판돌핀법이 제정된 후에야 협동조합이 사실은 사업을 하는 다른 방법이며, 경제 행위의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해석하는 독창적인 방식임을 깨닫게 됐다고 소개했다. “작은 규모라야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가장 잘 지켜질

4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시장의 틈새에서 오직 작은 규모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관념.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나라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방식이 실천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진실은 그 반대이다. 협동조합이 크면 클수록 그 정체성이 강해지고, 다른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스테파노 자마니, 115쪽 참조, 강조는 필자)

자마니가 지적한 것 중에 “협동조합이 크면 클수록 그 정체성이 강해진다”는 주장을 반증하는 사례는 스웨덴의 생협이다. 스웨덴 생협은 규모가 큰 곳이 조합원의 참여가 더 떨어진다.(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2012, 89쪽) 규모와 정체성의 관계는 생협이 놓인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작은 조직이 좋다. 조합원이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전체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조합원들이 감내하면 유지할 수 있다. 조합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접민주주의가 약화되고, 관료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이 약해지고 사실상 소비자로 전락하기 쉽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라”는 속담처럼 이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성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성장을 하면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은 작은 규모로는 경쟁력이 약해 살아남기 어렵다. 더구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조합이라면 대중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⁵

협동조합은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하는 목적은 승자독식의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⁵ 장중익·김신양 편(2001), 31~34쪽 참조.

협동과 상생의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협동조합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스위스의 생협(Migros와 COOP SWISS)은 생필품의 가격을 내렸다. 시장점유율 40%가 넘는 스위스 생협의 이 조치는 일반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위스 생협이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규모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히 컸기 때문이다. 스웨덴 생협은 식료품시장의 점유율이 21.5% 정도이고,(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77쪽) 덴마크 생협은 소매유통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다.(위 글, 140쪽) 이런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한국에서 배추파동이 있었다.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까지 값이 치솟았다. 이 때 아이쿱은 배추 한 포기에 1천 원대로 평소 가격을 유지했다. 2012년에는 주요 생필품 120가지 정도의 가격을 인하했다. 이런 조치로 조합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이쿱생협의 규모가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지역 결사체인가?

박승옥은 협동조합이 지역결사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뛰어넘는 사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 결사체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거나, “문제는 이런 협동사회경제의 연합.연방은 그 기초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역결사체와 사업체이지, 지역결사체는 사라진 거대한 사업체는 이미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점이다”(53쪽, 강조 필자)라는 지적이나, “성미산마을과 원주와 흥성, 성남, 안산, 대전, 전주, 은평 등지에서 모색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동조합 간 협동운동”(60쪽)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편향이 된다. 지역과 함께 협동조합의 부문별 협동도 대단히 중요하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는 협동운동이 처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역이 주(主)이고 부문은 종(從)이거나 그 반대라고 단언할 수 없다.

1990년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부문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이 주장을 한 ‘호세 루이스 올라솔로’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기존의 관계를 깨지 않아야 한다. 만일 기존의 관계를 해체한다면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지역을 기초로 한 그룹과 부문을 기초로 한 그룹들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부문 조직의 이점을 추구해야 한다. 즉, 이는 생산과 시장의 연계이다.”⁶ 그리고 몬드라곤은 2010년 현재 약 260개의 회사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4개 부문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다.⁷ 지역과 부문은 날줄과 씨줄 같은 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절대가 아니다.

마을공동체와 협동촌의 비전

박승옥은 “한살림과 아이쿱생협은 왜 하다못해 성미산마을 같은 마을공동체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했을까”(56쪽)라고 질타한다. 물론 이 부분이 아이쿱의 부족한 면일 수는 있다. 허나 이 비판이 단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 아이쿱에게는 훌륭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아이쿱은 협동촌 건설을 과제로 삼고 있다. 구례와 괴산지역에 클러스터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농촌지역에서의 협동촌 건설문제가 구체화 될 것이다. 아울러 도시지역에서의 협동촌 건설이라는 지난한 과제

⁶ 화이트 부부(1993), 281쪽 참조.

⁷ 김성오(2012), 16쪽.

에 대한 도전도 단초를 놓으려 한다. 보다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어우러져 건강한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생활 속에서 협동조합 관련 분야가 더 커지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부실 상품을 구입하라 강요할 수 있는가?

박승옥은 “아이쿱생협의 핵심지도자가 쓴 글을 보면, 아이쿱생협이 추구하는 목적이 주식회사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업체로서의 성장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가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 집담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57쪽) 신성식이 주장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이 자본의 성격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출자금은 조합원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언제라도 탈퇴하면서 뺄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불안정한 자본, 사업 필요에 못 미치는 자본규모, 높은 자본조달 비용으로 인해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 체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 연구가와 실천자들 모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장과 실험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쿱이 사업체의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고 본다.⁸

다른 하나는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세상은 선물로 돌아가지 않는다. …… 상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생협 상품의 사용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자본기업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승옥은 아이쿱이 성장신화에 빠졌음을 그 핵심지도자가 스스로 고백한 부분이라 지목하고, “아이쿱이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고 상품을 중요시하는 증거”라고 이해한 것 같다.

8 『생협평론』 9호,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신성식은 위의 글에서 분명히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생협이 뜻이 좋다고 해도 조합원들이 부실 물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생협은 좋은 상품을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이 성장하고 조직이 발전한다. 신성식은 이것이 생협의 ‘필요조건’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상품이 생협의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박승옥은 위의 글을 상품이 생협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한 증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의 오해에 대해서 필자는 혹시 박승옥이 이미 ‘아이쿱은 성장신화에 깊이 빠져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조합원 중심인 협동조합

필자가 감히 ‘박승옥이 아이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이쿱이 조합원(사람)을 중시한다는 증거가 여럿 있는데도 박승옥은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아이쿱은 불리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설령 조직에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합원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조합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원칙이다.

광우병의심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나 한미 FTA 반대를 비롯한 각종 연합 집회에 아이쿱 조합원이 여느 생협 조직의 조합원들보다 많이 참여한다.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외에, 다양한 조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 참여를 위해서 아이쿱은 끊임없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필자는 대한민국 협동조합 중에 아이쿱이 가장 교육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조합의 하나라고 자부한다.

아이쿱은 2000년 말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조합원들과 임직원의 차입운동으로 극복한 이래, 비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 우리 밀 사업, 공정무역,

북한 돕기, 정신대 할머니 돕기, 지역 생협 매장 건립, 생산자 선수금 사업, 우리 밀라면 공장 건립 등에 필요한 자본을 조합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는 조합원(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업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다. 박승옥이 나열식이라고 비난한 아이쿱의 사업보고서를 하나라도 찬찬히 읽어봤다면 글에서처럼 용감하게(?) 아이쿱을 성장 중심, 상품 중심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협동과 경쟁의 문제

박승옥은 아이쿱이 “왜 협동조합 간 협동은 커녕 바로 이웃에 매장을 개설하는 등 내부경쟁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장사꾼의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탐욕스런 재벌들이나 할 짓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을까”(56쪽)라고 비난하고 있다.

아이쿱은 다른 생협에 비해서 매장을 늦게 시작했다. 한 때 적자로 허덕이는 매장을 전면 철수했다가 2006년부터 다시 개설하기 시작했다. 늦게 매장을 시작하다 보니 매장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장사는 목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매장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곳에는 대개 다른 생협이나 사업체의 매장이 있다. 다른 생협의 이웃 자리를 피하여 매장을 개설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른 생협 매장 이웃에 아이쿱 매장을 개설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여럿 생겨났다. 아이쿱의 매장이 개설 된 후에 다른 생협의 매장에 타격이 미치면 미안하고, 별 타격이 없는 듯하면 안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장사꾼의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탐욕스런 재벌들이나 할 짓”이라고 지탄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질타하는 근거에는 협동과 경쟁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본다. ‘협동은 선이고, 경쟁은 악이다. 협동조합은 협동해야 하고, 경쟁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행태이다’라는 판단이 그것이다. 과연 경쟁은 자본가들의 행태이므로 협동조합은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다. 협동조합도 경쟁해야 한다. 더 나은 물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도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협동조합 간에도 경쟁할 수 있다. 이 측면을 무시하다 보면 협동조합 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점자본가에게 패배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다만 “경쟁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윤리적인 규칙과 원칙에 입각해야만 한다.”(이바노 베르베르니, 18~21쪽)

아이쿱이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면 그 지역에서 획기적으로 조합원이 확대 되는 경험을 한다. 전국 어느 곳도 예외가 없다. 확대된 조합원의 일부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중 조합원 포함)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처음으로 생협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 보자. 목 좋은 곳을 선점하고도 확대 가능한 조합원을 확대시키지 못한 매장이 더 협동조합적인가? 그곳에 새로운 매장을 개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생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 해당 매장의 매출만이 아닌 전체 협동조합 운동의 목적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므로, 어느 곳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내가 이 지역을 선점했으므로 당연히 이 지역 상권을 독점해야 한다. 내 구역에 다른 매장이 들어서는 것은 자본가나 할 짓이다, 라는 생각은 협동조합적인가? 도리어 이런 사고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이름 아래 독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한 가지 측면을 들어 아이쿱을 “성장신화에 빠졌다”거나 “장사꾼의 상도 의에도 어긋나는 탐욕스런 재벌들이나 할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개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 기존 매장의 영향으로 아이쿱의 신규 매장이 고전하고 있다는 말을 별로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를 두고 아이쿱이 성장신화에 빠졌고, 사람은 중시하지 않고 상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사업행태를 보이는 증거라 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임금의 문제

박승옥은 “해마다 자동 인상되는 임직원의 호봉제 급여체계로 인해 인건비 부담 때문이라도 일정 비율 이상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호봉제 급여체계가 말로 과감히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한다. 그런 급여체계가 말로 생협을 성장신화에 중독되게 만드는 아편이다”(56쪽)라고 질타하고 있다. 그런데 박승옥은 협동조합의 임금체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호봉제는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것이고, 임금압박 때문에 성장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많은 봉급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사고로는 협동조합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협동조합에는 정말 유능한 경영자가 필요하다. 서구 협동조합의 역사가 조합원의 대표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유능한 경영책임자를 정하여 경영을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길 바란다.

부연하자면 나는 호봉제를 옹호하지 않으며 아이쿱 또한 호봉제를 금과옥조로 여기지는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황기에도 해고당할 염려가 없어야 하며,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면 차라리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 자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매한 이상을 가졌어도 생활이 불안정하면 좋은 직원들은 퇴직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몬드라곤이 내부 임원 대 직원의 임금격차를 초기 1:3에서 1990년대 이후 1:6까지로 확대한 것은 좋은 실무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김성오, 144쪽) 그렇다고 해서 상한선 없이 많은 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다. 임직원의 임금은 조합원이나 농민 등 생산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⁹

⁹ 협동조합의 임금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은 박승옥이 지탄하는 신성식에게 오히려 엿볼 수 있다. 신성식의 “협동조합의 노동과 임금에 대하여”라는 글을 참조하라.

협동조합은 대안을 넘어 주류를 향해 나가야 한다

박승옥은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연대와 연합, 협동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는 **대안의 경제운동조직인 동시에 대안의 사회운동조직이다.**”(50~51쪽, 강조는 필자)라 하고 있다. 박승옥의 표현대로 경제조직이며 사회운동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면 사회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활동하여야 한다. 그 활동 자체가 ‘성장을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앞에서 필자가 인용한 박승옥의 주장들에서는 협동조합의 성장 자체를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다.

협동조합은 부지런히 성장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제반 원칙을 잘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살아남고, 적극적으로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살벌한 자본주의를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로 바꾸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¹⁰ 온 땅을 가득 채워야 한다.

글을 마치며

우선 공개적으로 생협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박승옥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한국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의욕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시작했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러지거나 변질될 수 있는 위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조언하면서 더 많은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나 원칙 등은 200여 년의 세계 협동조합 역사를 통해 검증되고 정립된 것들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보의 공개, 조합

¹⁰ 성경 창세기 1:22

원의 참여, 기아와 환경 등에 대한 관심,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 간의 연대 등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아이쿱을 비난하는 소위 ‘뒷담화’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나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박승옥씨가 문제제기를 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은 아이쿱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부족한 글이나마 그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아이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려 노력했다. 활발한 반론이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이 한국의 생협과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영광이겠다.

참고자료

박승옥, 『녹색평론』, 128호(2013년 1~2월), 녹색평론사, 2013.

(사)한국생협연대 지음, 『새로운 생협운동』, BOM, 2002.

아이쿱생협연대 지음, 『협동, 생활의 윤리(아이쿱생협 10년사)』, 푸른나무, 2008.

신성식, 『새로운 협동운동의 미래』, 푸른나무, 2011.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iCOOP생협연합회, 『협동조합의 이해(iCOOP생협 활동가를 위한 학습자료시리즈 1)』, 2012.

장종익·김신양 편,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사)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2001.

윌리엄 F. 화이트·캐서린 K. 화이트 지음, 김성오 역, 『돈드라곤에서 배우자』 나라사랑, 1993.

레이들로(A.F.Laidlaw) 지음, 김동희 역,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2000.

이바노 바르베리니, 김형미 외 역,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푸른나무. 2011.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 역사비평사, 2012.
스테파노 자마니, 베라 자마니, 송성호 역,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2012.
사이토 요시아끼, 다나카 히로시 옮김,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그물코. 2012.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2011 북유럽 협동조합 연수보고서」, 2012.
장종익, 「유럽 주요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2.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iCOOP생협 2012년 연차보고서」,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2012.
“자본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생협평론』 9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2. [i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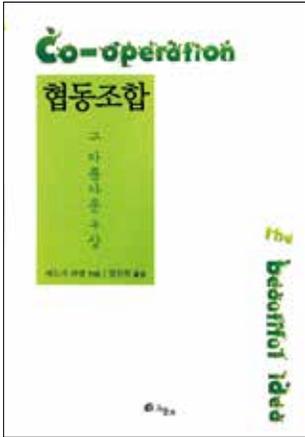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노동자, 도시 빈민, 지역 주민 등이 스스로가 필요하여 생협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주적으로 운영해 온 역사를 정리하는 시도 중 하나이다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푸른나무 | 352쪽 | 신국판 | 15,000원

출판사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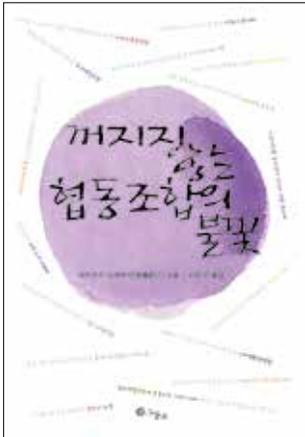
지역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여성들의 움직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그리고 도시빈민 운동에서 소비조합과 의료협동조합 운동을 어떻게 추진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홍성과 원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생협 중심으로)과 협동교육연구원의 역할 그리고 정권의 탄압으로 사라진 양서협동조합운동 등도 언급하고 있다. 왜 생협 운동의 선배들은 정권의 탄압과 자본의 방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을 시도한 것일까?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을 직접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러한 다양한 시도를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2010년 산지에서는 배추 값이 한 포기에도 2천 원이 안 되는데 소비자 가격은 1만5천 원으로 폭등할 때 생협은 소비자 가격 2천 원을 유지했고 반대로 2011년 배추 값이 폭락하여 산지에서 포기 당 300원도 건지지 못하게 되어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을 때에도 생협은 농민들에게 1천 원 이상을 지불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협은 한미FTA에 대해 한국 농업을 몰락시키며 식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때나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조합원과 수십조 원의 매출을 하는 생협을 비롯한 다른 협동조합들이 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 소득 보장 그리고 정부 비판과 같은 일들을 규모도 조합원 수도 작은 생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중략)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협동조합에 관한 책 가운데 실용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책은 역사 속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는지를 조직의 구조로 접근하면서,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겪게 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주로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한다.

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2012)
그물코 | 352쪽 | 153 x 224 | 9,000원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큰 오늘날, 협동조합이 이상으로 삼아온 '서로 함께 돕는', '호혜'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협동의 사회시스템으로서 지금의 협동조합운동을 더욱 널리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2012)
그물코 | 184쪽 | 신국판 | 10,000원



현대일본생활협동동소사

1879년 일본 최초의 생활 교리조소사로부터 일본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한 권으로 읽다

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2012)
그물코 | 220쪽 | 신국판 | 12,000원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간도서

번호	제목	발행년도
1	『진짜 가격은 얼마 입니까?』 (e-book)	2013
2	"제 28회 포럼 자료집 <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3	제 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3
4	제 5회 『2012윤리적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5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6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2012
7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에드가 파넬 저, 엄찬희 옮김)	2012
8	『후쿠이생협의 도전』 (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2012
9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오리토이사이오 글, 와카니시 케이코 일러스트, 이은선 옮김)	2012
10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사이토 요시아키 지음, 다나가 히로시 옮김)	2012
11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와카츠키 타케유키 지음, 이은선 옮김)	2012
12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 26회 포럼 자료집 <일본생협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13	"제 27회 포럼자료집 <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14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15	제 4회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 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16	제 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2
17	"제 26회 후속교육 자료집 (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18	"제 25회 후속교육 자료집 < 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아이쿱생협 경험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19	제 24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20	"제 25회 포럼 자료집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21	제 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22	"제 23회 포럼 자료집 <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23	"제 22회 포럼 자료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24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1-01 <iCOOP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2011
25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1-0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2011
26	iCOOP협동조합연구소 번역서 2011-0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2011
27	iCOOP협동조합연구소 번역서 2011-0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	2011
28	"제 19회 포럼 자료집 < 아이쿱 직원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29	"제 20회포럼자료집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
30	제 21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31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32	"제 23회 후속교육 자료집 <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2011
33	"제 20회 후속교육 자료집 < 복지국가스웨덴에대하여">	2011
34	제 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35	제 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 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1
36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37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이바노 바르베리니 지음, 김형미 외 2인 옮김)	2011
38	『새로운 생협운동의 미래』 (산성식 지음)	2011
39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2010
40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2010
41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3 <생협 벨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2010
42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4 <2009 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0

43	"제 18회 포럼 자료집 <아이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44	제 17회 포럼 자료집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45	제 16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46	제 15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47	"제 14회포럼자료집 <생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48	제 13회 포럼 자료집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10
49	제 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50	'일본어 자료 번역모임'의 활동자료집	2010
51	'일본어 자료 번역모임'의 활동자료집	2010
52	"제 13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0년 유럽영국모드라운 방문 보고회>"	2010
53	"제 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54	iCOOP생협 ICA가립 기념 심포지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 책임>	2009
55	제 2회 윤리적 소비 논문 쓰기 공모전 자료집 <논문부분 수상자 논문집>	2009
56	제 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9
57	우리밀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58	제 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59	제 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60	『생활속의 협동』 (오사와 마리 편저, iCOOP협동조합연구소 옮김)	2009
61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iCOOP협동조합연구소 · 한겨레 경제연구소 옮김)	2009
62	"제 9회 후속교육 자료집 <한국의 자세 · 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63	제 8회 포럼 자료집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64	제 9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65	"제 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2008
66	제 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분 수상작 자료집>	2008
67	제 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8
68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연대 지음)	2008
69	"제 6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8
70	제 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
71	제 5회 포럼 자료집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72	"제 6회 포럼 자료집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	2007
73	제 7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7
74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활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2007
75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76	iCOOP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 -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7
77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78	제 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7
79	"제 4회 후속교육 자료집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80	제 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81	제 2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2006
82	제 3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정무역을 이 갖는 의미와 방향>	2006
83	출판기념 토론회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84	제 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85	제 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86	"제 1회 후속교육 자료집 <제 1기 아카데미 후속교육>"	2006
87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일본 21세기 코프연구소센터 위임,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옮김)	2006
88	『새로운 생협운동』 (한국 생협연대 지음)	2002
89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1980년 모스크바ICA레이들로보고서)』 (김동희 역,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2000



생협평론 e-book 발행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생협평론을 구독할 수 있도록, 9호부터 e-book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10호는 4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용방법

- 교보문고, 리디북스, 알라딘, yes24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구입 가능



팟캐스트 'coopcast' 운영

협동조합관련 학습자료와 후속교육, 포럼, 생협아카데미 등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영상 및 녹음파일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 아이폰 : apple iTunes Store - 팟캐스트 'coopcast' 검색
- 타 기종 스마트폰 / 일반 PC :
<http://icoop-institute.iblug.com>



홈페이지 개편

연구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 중입니다. 협동조합 관련 자료와 연구소의 활동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소 <http://icoop.re.kr>



CO-OPERATIVES JOURNAL vol.10 Spring 2013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Co-operative Ecosystem:

An alternative to Korean economic crisis: the Co-operative Ecosystem

KIM, Gi-tae

An idea of a Co-operative Ecosystem

SHIN, Sung-sik

Achieving happier labor together with the Co-operative Ecosystem

KIM, Hong-beom

Co-operative Ecosystem and member activities : In case of iCOOP Consumer Activities

KWON, Mi-ock

What does the Co-operative Ecosystem look like?

OH, Hang-sik

Round-table :

Making Co-operative Ecosystem should be this way

Special Contribute :

A debate on the Growth Myth of Co-operative

SHIN, Chul-young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Podcast(coopcast) <http://icoop-institute.iblug.com>

 Facebook <http://www.facebook.com/icoopinstitute>

www.icoop.re.kr

